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2021. 11. 30. (화) 14:00~16:00
비대면(온라인 ZOOM)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목차

-
- 004 [인사말] **조진경** 대표 (십대여성인권센터)
005 **서순성**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장)
-

주제 발표

- 007 [발제 1]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후 1년**
배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천지인/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
- 041 [발제 2]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조진경 대표 (십대여성인권센터)
-

토론

- 132 [토론 1]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
- 145 [토론 2] **김현아** 변호사 (한국젠더법학회/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
- 146 [토론 3] **김대중** 사무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
- 147 [토론 4] **조주은**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경찰청 생활안전국)
-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프로그램

주최 : 십대여성인권센터

주관 :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일시 : 2021년 11월 30일(화) 오후 2시~4시

좌장 : 박숙란 변호사 (변호사 박숙란 법률사무소 /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순서	시간	내용
인사	14:00-14:10	인사 및 토론회 안내
주제 발표	14:10-15:00	[발제 1]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후 1년 배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천지인/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발제 2]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조진경 대표 (십대여성인권센터)
휴식		
토론	15:00-15:10	[토론 1]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15:10-15:20	[토론 2] 김현아 변호사 (한국젠더법학회/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15:20-15:30	[토론 3] 김대중 사무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15:30-15:40	[토론 4] 조주은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경찰청 생활안전국)
종합토론	15:40-16:00	질의응답

인사말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발',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피해자로 보호받도록 일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개정 「아청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로 보호하고 있을까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세계 속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피해 속도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범행 수법은 갈수록 악랄해지고 교묘해지며, 피해아동·청소년의 연령은 갈수록 저연령화되는 것이 현실적 문제입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은 여전히 온·오프라인 속에서 심각한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에 노출되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법률지원단과 함께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이 삭제된 아청법이 시행된지 1년이 경과한 지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발제문을 써준신 배수진 변호사님, 토론을 맡아주신 김현아 변호사님, 강정은 변호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어려운 자리에 와주신 여성가족부 김대중 사무관님, 경찰청의 조주은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님, 좌장을 맡아주신 법률지원단 단장이신 서순성 변호사님, 그리고 이 모든 자리를 준비한 우리 십대여성인권센터 상담원들, 모두에게 대표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십대여성인권센터의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바쁘고 일도 많았을 텐데, 우리 변호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피해아동·청소년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서 최고의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 열리는 법률지원단 회의부터 소모임, 워크숍, 공동고소·고발, 기자회견, 법률 개정안 작성 등 정말 많은 일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 우리 십대여성인권센터에 함께 계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청법」개정의 한길에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얼굴 보면서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해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또한 2021년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하여 개정「아청법」시행 1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갖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관심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늘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을 맡고 있는 서순성변호사입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은 법조계 내에서 쟁쟁하게 이름을 날리고 있는 성매매·성폭력 사건 전문변호사님과 성매매·성폭력사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신진변호사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률지원단은 2013년 출범하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률지원 및 법률개정작업으로 첫번째 기획했던 것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관련 규제 및 처벌법규 마련이었고, 이와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의 삭제였습니다.

저희 법률지원단은 성매매피해청소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기 위해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을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성매매 피해사건에 있어 구매자와 알선업자에게 강화된 처벌이 가능하도록 촉구했고, 성매매 피해청소년은 엄연한 여성폭력의 피해자로 인식되도록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사례를 모집하여 고발 및 기획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보호와 지원의 범위를 확장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십대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낙태금지에 관한 법률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논의 되어 오던 것을 하나의 틀로 모아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전문가 연구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회의원, 법원, 검찰, 경찰, 여성가족부 등 관련 정부기관 담당자들을 수차례 모아 공청회를 진행하였고, 영국, 스웨덴 등 각국의 국회의원과 장관 등을 초청하여 인권선진국의 사례를 듣는 국제심포지움의 개최 및 UN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이행사항 모니터링 및 의견진술을 하였고, 국회에서 입법촉구를 하는 1인 시위 등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법개정을 이루어냈고 2020. 11. 20.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개정 법률이 마침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이렇듯 각고의 노력 끝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이 삭제된 개정안이 시행된 지 어엿 1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세계 속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피해 속도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성범죄자들의 범행수법은 갈수록 악랄하고 교묘해지고, 피해아동·청소년의 연령은 갈수록 저연령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개정법이 시행된 1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의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낙수가 바위를 뚫어내듯 입법을 이루어 낸 것처럼, 이제 우리는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이 삭제된 개정 법률에 기초해, 현재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시 신발끈을 묶을 것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도 소중한 의견 나눠주시고, 십대여성인권센터와 늘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발제 1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후 1년

배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천지인 /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십대여성인권센터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



1. 들어가며

‘대상 아동·청소년’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에 규정되어 있던 용어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하게 하므로 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게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¹⁾를 하는 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도 처벌을 받기 어렵게 오�히려 대상 아동·청소년을 협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악순환은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더욱 더 취약한 사회적 약자로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나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입장과 대립하면서 악순환은 이어졌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일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논의하였고, 2020. 4. 9.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권리보호 전문가 집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그 동안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던 법무부가 기존 입장을 바꾸어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기로 약속하였고, 2020. 5. 19.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대상 아동·청소년이 삭제되고(2020. 11. 20. 시행)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되어 보호와 지원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다.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에 반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므로, 대상 아동·청소년이 삭제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아동·청소년이 모든 성착취 피해로부터 보호받고 있는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문제는 없는지, 앞으로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소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 는 사람을 주체로 표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2.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필요성

가. 대상 아동·청소년의 의미

개정전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7호는 “대상 아동·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하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이라 명명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과 구별하고 있었다.

구 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0. 2. 3. 제정된 구 청소년성보호법(2000. 7. 1. 시행)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표명하면서, 동법 제3장이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이라는 제목으로 대상 청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처리 대상(동법 제13조²) 참조임을 명시하여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고 인권을 보장하라는 동

2) 제13조 (소년부 송치) ①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對象 靑少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선도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며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사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의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시작되었다.

이에 2004. 3. 22. 구 청소년성보호법은 “선도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하면서 대상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으나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입법자의 의사를 밝혔다.

2007. 8. 3. 구 청소년성보호법(2008. 2. 4. 시행)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재범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성범죄자 등록·열람 등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격리 및 보호결정을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전면개정되었으나 당시 제2조(정의) 제7호에서 “대상 청소년은 제1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죄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을 말한다”는 정의 규정이 추가되고³⁾ 제4장 청소년의 선도보호라고 제목만 변경되고, 기존과 같이 대상 청소년을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의 대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였다. 큰 고민 없이 도입된 대상 아동·청소년은 약 20년 동안 수많은 아동·청소년의 삶을 옥죄어 왔던 것이다.

최초 제정시 회의록에 의하면, 권영자 의원은 본회의에서 “첫째, 청소년에 대한 각종 성착취 행위 및 성폭력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여 특히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이러한 유해 행위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성매매 행위 등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해 선도, 보호, 상담 등 보호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성범죄 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효과를 강화하였습니다”라고 제안 설명하였다. 청소년에 대한 각종 성착취 행위 및 성폭력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해야 하지만 성매매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니라, 선도, 보호, 상담 등을 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제정 당시 본회의에서 성착취, 성폭력, 성매매 등이 언급되었지만, 성매매 행위의 대

3) 청소년성보호법은 2010년 전부 개정되면서 ‘청소년’ 대신 ‘아동·청소년’으로 변경되었다.

상이 된 청소년은 성착취와 성폭력의 피해 청소년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성매매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당연히 보호처분을 통해 선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성착취나 성폭력은 폭행 또는 협박이 매개된 것이나, 성매매는 그러하지 않다는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서 유독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자발성’⁴⁾이 부각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건강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알려주고 성적으로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호해야 하지 범법자 취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지 않으므로 대상 아동·청소년 도입에 좋은 취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나. 문제점

구 청소년성보호법은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구별하여 규정하면서 대상 아동·청소년을 형사 처벌하지는 않았지만, 대상 아동·청소년을 소년법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하고 대상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은 불이익이라는 점에서는 형사 처벌과 다를바 없는 효과를 낳고, 소년법상 범죄 소년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등 범법자 취급을 받았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사정, 예를 들어 가정의 해체로 가출할 수밖에 없거나 생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유입되었다는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부모에게 일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아

4) 성착취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은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자발성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기이하게도 성매수남이나 관련자들이 상대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자발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구도를 보인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성매매 산업에 유입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피해를 입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스스로 꺼리게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의 처지를 악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협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등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존재함으로써 가정과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이 사회에서도 피해 악화일로에 놓이게 되는 모순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제39조(소년부 송치) ① 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법원 소년부 판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수강명령을 병과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강명령 집행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여성·시민단체의 삭제 요구

이에 여성·시민단체에서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폐해에 대해 두루 알리면서 대상 아동·청소년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성적학대를 포함한 폭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제34조는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1991. 11. 20.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아동에 대한 성매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2004. 9. 24. 비준하였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위 선택의정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자발성은 문제삼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성·시민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이 처한 어려움, 가정 해체나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에서의 생활이 폭력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정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놓인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범법자 취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는 일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므로 대상 아동·청소년의 개념이 현실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이다.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삭제 권고

이에 2016. 8. 8. 남인순 의원과 2017. 2. 13. 김삼화 의원이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여성가족부와 국회 여성가족 위원회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⁵⁾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7. 25. 위 발의안의 내용과 같이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여 보호와 지원을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전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상 아동·청소년 폐지 권고

2019. 9. 18.~19.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 10. 3. “13세 이상 아동이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다고 취급돼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간주된 아이들은 범죄자로 취급되고, 보호처분에 의해 구금돼 범죄 신고를 못하는 것은 물론 법률적 조력·성폭력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원회는 “(한국 정부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지칭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보호처분을 폐지해야 한다”며 이어 법률 개정을 통해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지위를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분류할 것을 촉구했다⁶⁾.

5) 2018. 2.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2018. 2. 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병훈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의견으로 제2소위 회부결정된 이후, 법개정 전(2020. 4. 30.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한번도 법사위 제2소위 의제로 다루지지 않았다.

6) 세계일보, 염유섭 기자, 2019. 10. 4. <http://m.segye.com/view/20191004504833> 참조

바. 법무부의 삭제 반대

법무부는 대상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적절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하고,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를 반대하였으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 조차도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통해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재범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동·청소년이 성을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거래하고 있다고 오해함으로써 가능한 설명이므로, 대상 아동·청소년의 삭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터진 이후 법무부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를 이해하는 입장으로 변경하여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를 약속하였고, 법무부 장관의 삭제 약속은 지지부진하던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에 박차를 가했다.

3. 개정법 내용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대상 아동·청소년 대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소년부 송치 규정과 보호처분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시설이나 상담 시설로 연계하거나 지원센터에서 교육 상담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되었다.

개정법에 의하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원하면 교육, 상담은 물론, 보호 및 사회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거나 범법자 취급을 받게 할 위험성이 사라진 것이다.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9.>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④ 삭제 <2020. 5. 19.>

제39조 삭제 <2020. 5. 19.>

제40조 삭제 <2020. 5. 19.>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교육·상담 및 지원
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4.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5.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프로그램 운영
6.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9.]

4. 드러나는 문제들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와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한정된 범위에서 허용하던 합정수사를 명문화하였다.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더욱 굳건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디지털 성범죄로 한정된 범위에 대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하여 신분비공개수사를,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을 체포 또는 증거 수집하기 위하여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한 것이다.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그러나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가 의미하는 아동·청소년을 성착취의 종류에 따라 나누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기로 한 개정 취지가 아직은 전국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여전히 아동·청소년을 보

호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성매수자를 검거하기 위한 수단이나 증거 수집에 협조해야 할 피의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자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사례 1

만 18세 미성년자 갑녀는 SNS를 통해 성매수남으로부터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 성매수남은 갑녀에게 재차 연락하여 자기와 함께 조건만남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갑녀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였다. 갑녀는 갑녀를 보호해 준다는 성매수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성매수남이 알선(이하, ‘알선자’라 한다)하는 제3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기도 하였다.

어느 날 갑녀는 알선자의 알선에 의해 성관계를 해야 했는데, 알선자가 갑녀에게 모텔에 가서 잠시만 쉬자고 제안하였고, 갑녀 역시 피곤하였으므로 쉬고 싶다는 알선자의 말을 믿고 모텔에 갔다. 알선자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였으나, 모텔에 가서 태도가 변해 갑녀를 강간하였다.

알선자는 갑녀에게 ‘재수 없다 여기라’며 되레 큰소리쳤고, 이후 갑녀가 성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차용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져가기 시작했다. 갑녀가 반환을 요청하여도 알선자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알선자를 수상하게 여긴 갑녀가 SNS 검색을 통해 알선자로부터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 여성 을녀와 연락이 되었다. 을녀는 갑녀에게 알선자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했고, 갑녀는 을녀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

며칠 후 을녀가 갑녀에게 담당 경찰을 만나러 갈 것이고, 그 담당 경찰에게 갑녀의 피해 상황도 알렸다면서 같이 담당 경찰을 만나러 가자고 하였다. 갑녀는 성매매를 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으면 알선자를 신고하고 알선자에게 편취당한 돈도 돌려받을 생각으로 을녀와 함께 경찰서에 갔다.

그러나 담당 경찰은 갑녀에게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았고, “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갑녀가 피해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여도 말을 끊어 신고하고 싶다는 의사도 표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틈틈이 갑녀와 을녀를 타박하기도 하였다.

담당 경찰은 종이 한 장을 가져오더니 갑녀에게 신상정보를 쓰라고 하였는바 그 기재 내용에 따라 갑녀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담당 경찰은 알선자와 갑녀, 을녀 등을 분리하지 않았고 갑녀에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당 경찰은 알선자와 갑녀, 을녀가 합의각서를 쓰도록 종이를 주고 각서를 적고 있는 동안 자리를 비우다가 돌아와서는 갑녀, 을녀에게 “알선자가 반성하는 것 같다, 돈도 무조건 줄 것 같다, 그만해라 경찰이 돈 받아 주는 역할은 아니다, 이것(을녀의 피해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파쇄하면 다 끝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을녀가 피해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파쇄하고 알선자가 쓴 각서를 갑녀에게 주고는 당사자들을 귀가시켰다.

갑녀는 부모님에게 통지가 되지 않는다면 알선자를 신고할 생각이었으나 갑녀의 말을 끊는 담당 경찰 때문에 신고하고 싶다는 언급조차 하지 못했고, 담당 경찰은 을녀를 통해 갑녀의 피해 상황을 알고, 갑녀가 미성년자 있었음에도 갑녀의 자초지종을 들어 보지도 않고 갑녀와 알선자, 을녀 사이의 문제를 ‘금전 관계’로 단순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만 하였다.

이에 갑녀는 십대여성인권센터와 담당 경찰을 직무 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 등으로 고소·고발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은 예상보다 더욱 지지부진하였다.

○ 사례 2

만 17세 미성년자 병녀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서 알선자에 의한 성매매 영업에 이용되던 중 성매수자로 위장해 잠입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병녀는 성매매를 하기 위한 방에 있었고, 경찰들은 문 앞을 막고 뒤돌아서 있으며 병녀에게 옷을 갈아 입게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병녀는 경찰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게 되어 너무 놀랐고, 너무 놀란 나머지 과호흡과 몸이 떨리는 증세를 보였으나 경찰은 이를 보고도 즉각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병녀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그제서야 상비약을 복용하게 하였고, 그 상태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대기 중이던 성매수남에게 “애 미성년자인 거 알고 있었냐, 오늘 했으면 아동한테 한거다. 가정 있지 않냐. 안 한게 다행이고 훈방조치될 거다. 진술서를 쓰고 가라”라고 말하여 가해자인 성매수남은 훈방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병녀에게는 형사 처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동일한 성매매업소에 있던 성인인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성매수남과 마찬가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훈방조치하였으나, 경찰은 병녀를 데리고 지구대로 이동하였고, 긴 시간 대기시키고, 심야 시간에 병녀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부모가 지구대로 오도록 하였고, 병녀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로 이동하면서 병녀는 불안증세가 심각해져 구토하였다.

병녀는 부모 앞에서 성매매 내용을 진술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으나 경찰은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동석해야 하는 것이라며 병녀에게 보호자 동석을 동의하도록 강요하였고, 결국 병녀는 수치스러움을 참고 부모 앞에서 성매매 내용을 진술하였다.

익일 새벽 1시에 경찰은 병녀를 청소년성보호법상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매매처벌법상 피의자로 신문하기 시작하였고, 피의자 신문은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경찰로부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명단을 통보받은 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병녀의 피해를 알게 되었고,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도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병녀를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해당 경찰에 적용 법률이 잘못되고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나 경찰로부터 수사는 적법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취지를 몰각하고 병녀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법의 취지를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 사례 3

만 18세 미성년자 정녀는 집에서 차별받고 용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친구로부터 조건만남을 듣게 되었다. 친구는 정녀에게 조건만남이 실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성관계를 하는 척만 하고 화대만 받는 일종의 사기라고 알려주었다.

가출을 하고 친구와 친구의 남자친구를 따라 거주지가 아닌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친구와 친구의 남자친구가 알선한 성매수남들을 만났다. 그러나 친구의 설명과 달리 성관계를 하였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성매매대가는 친구와 친구의 남자친구에게 줬고 그 돈으로 생활하였다.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으나, 친구와 친구의 남자친구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속하여 성매수남들을 알아봐 주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해야 했다. 너무 힘들어서 도망도 갔으나 친구의 남자친구에게 바로 붙잡혔다.

2~3개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성매매를 하니 너무 힘들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에게 사정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집에서는 여전히 차별받고 용돈을 받지 못해 일상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 결국 조금 더 변화한 곳에 사는 아는 언니 집에서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최소한의 인원만을 채용한 까닭에 혼자서 3인 역할을 해야 하니 몸이 너무 피곤하였다. 아는 언니에게 생활비를 줘야 했으므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는 글을 올렸다.

성매수남들은 대체로 변태이거나 진상이 많았으므로 정녀가 게시한 글에 이유 달지 않고 만날 장소를 물어보는, 점잖아 보이는 성매수남에게 쪽지를 보내 만남 장소를 정하고 약속된 장소에 나갔다.

그러자 상대가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주면서 경찰서로 가자고 했다. 정녀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한 경찰은 부모님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고 했고, 정녀는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만은 안된다고 버텼다. 경찰은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을 테니 성구매자를 검거할 수 있게 정보를 달라고 했고, 또 다시 입장이 바뀌어 부모님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정녀를 압박하였다.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조회할 수 있다고 으박도 지르고 회유하기를 반복하였고, 성매매처벌법으로 입건된다거나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입건된다면서 죄명도 헛갈려했다.

혼자서 경찰서에 붙잡혀 3시간 가량 울면서 버티다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활동가에게 연락이 닿았고, 활동가가 경찰서에 도착한 뒤에 활동가의 도움을 받고 간단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할 수 있었다.

경찰은 성매수자를 구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정녀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광고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정녀는 그 사건이 부모님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웠고 사고를 친 다른 학생들처럼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불안에 떨었다. 이에 지원센터에서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문의하여 정녀를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담당 검사의 소환을 듣고 정녀가 처벌될 것을 우려해 선임한 변호인과 동행하여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고, 담당 검사는 정녀의 사건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고 처벌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였으며, 정녀가 성매수자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 물었으나 정녀가 2~3개월 전에 잠시 만난 성매수자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대답하자, 정녀가 현재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예전과 달리 가족과 서로의 고민에 대하여도 대화를 하며 나름 바쁘게 생활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호관찰도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면 피해아동·청소년을 응원하였다.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은 기소유예로 처분하였다.

5.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개정 취지 및 인식에 부합하지 않음

위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의 이해 부족을 보여준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게 된 취지는 대상 아동·청소년이나 피해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행위가 성매매이거나 성폭력이거나 아

동·청소년 입장에서는 성착취를 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인데도 대가를 받았거나 다소간의 강압적인 행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다르게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행태를 보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여성으로 보고, 청소년성보호법상의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성매매처벌법상 처벌되는 피의자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 취지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치인 것이다.

나. 현행법에 위반됨 - 사례 2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제38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하지 않는 대상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임은 법령상 너무나 명백하다.

청소년성보호법보다 성매매처벌법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처벌하기 위하여 성매매처벌법위반의 피의자로 수사하는 것은 법령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성매매처벌법은 청소년성보호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성매매처벌법보다 청소년성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확실하다.

성매매처벌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5. 19.〉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④ 삭제 〈2020. 5. 19.〉

[제목개정 2020. 5. 19.]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피의자로 입건하거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안되는 것이다.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의미 역시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 개월 동안 모든 형사 절차를 거쳐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인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다. 법의 공백 - 사례 3

사례 3 정녀의 경우는 문제가 되는 행위가 성매매 광고이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광고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제20조 제1항 제3호).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 광고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 2021. 9. 24. 이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금지하고, 성관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성적 대화를 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그럼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한 아동·청소년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가가 쟁점이 된다.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고 처벌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한 것 자체를 처벌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성매매 게시글을 올리지 않고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과 성매매 게시글을 올리고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을 구별하여 전자만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한정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성매매 게시글을 광고한 것만으로 해당 아동·청소년을 처벌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다. 자발적이든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든 구별하지 않고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도록 개정된 취지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개개 경찰마다 다른 해석과 법 적용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는 아동·청소년을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태도와 성매수남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지양해야 함 - 사례 1

성매매는 성구매자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능에 따라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성매매는 성매매 산업으로 이해해야 하고, 성구매자가 존재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 법제에서 성구매자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불법성을 비교하는 논의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3 판결은 ‘성매매는 권력에 의한 비가시적 폭력상황이고, 순수한 자발적 성매매는 없다’라고 표방하여 세간에 잘못 인식되어진 성매매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실시하였다. 일독해야 할 필요가 있어 아래에서 인용한다.

2. 성매매는 권력에 의한 비가시적 폭력상황이다

성매매는, 단순히 성을 파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만 해석될 수 없는 특수한 정치·사회적 문제로서, 성매매 여성이라는 사회적 최약자에 대한 일종의 폭력이고, 그것이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심각한 사회현상이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성판매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여성과 모성 보호라는 헌법정신에 비추어도 여성 성판매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 2(전원재판부) 결정 중 일부 위헌의견(재판관 김이수, 강일원)] … 한 쪽 성별이 대부분 구매자가, 다른 쪽 성별이 대부분 판매자가 되고 그에 대한 낙인효과도 판이한 현실에서 성매매를 단순히 자유로운 개인 간의 등가적인 교환이라는 성맹적(gender-blind) 시각이 아닌 성별화된 현상으로 보아 성매매 구조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성이 어떻게 다르게 발현되는지 및 그러한 섹슈얼리티의 차이 안에 내재된 권력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갔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성매매는 성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적 영역이긴 하지만,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대가로 한 계약행위이자 경제적 이익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래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생활의 영역으로 볼 수는 없다. 한국과 같이 성매매가 창궐하는 사회에서는 성매매는 단순히 올바른 성규범의 정립이라는 개인적·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사회구조의 차원에서 파악되고 대처되어야 하는데, 광범위하게 행하여지는 성매매는 여성의 성(sexuality)이 거래되고 교환되는 것이라는 점을 보편화시킴과 동시에 빈곤, 가족, 폭력 등을 매개로 하여 여성을 언제라도 성매매 여성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사회상황에 달렸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정희진은 성의 상품화는 성매매의 본질이 아니고, 여성성과 남성성이 등가 교환되지 않는 사회에서 여성적 자원(몸)과 남성적 자원(돈)이 교환되는 성매매는 합리적 경제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본질은 왜 여성의 몸이 더 상품화되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행위가 극단적으로 성별화되는지, 즉 상품화의 성별성에 있다고 한다.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 성매매는 젠더 이해(gender interest), 즉 남녀 간의 성별 권력관계로 인식되기보다는 성보수주의, 도덕주의, 복지 차원의 인식이 강한 바, 가장 성별화된 현상에 대해 가장 성인지적 의식이 낮다는 것이다[정희진(2014), 「정희진처럼 읽기-내 몸이 한 권의 책을 통과할 때」, 교양인, 202-210쪽 참조]. … 이나영 교수는 성매매를 ‘여성혐오에 기반한 구조적 젠더폭력’이라고 정의하면서, 성매매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배와 통제의 정당성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이며 가시적인 폭력을 넘어서, ‘정상적인 상태에 내재된 폭력’으로서 비가시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자발적 선택과 구조적 강제 담론의 경합을 통해서 본 성매매 관련 주요 결정의 분석, 김선화, 젠더법학, 제9권 제2호).

3. 순수한 자발적 성매매는 없다

성매매 알선 또는 강요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성매매 여성 대부분이 온전히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들의 위협에 완전히 제압된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유 또는 주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마음 등 다양한 약점을 이용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상이 될 수도 없다. 여성들이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되는 근원적 이유와 우리나라의 성매매 형태 등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의 대부분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교육의 기회가 적었거나 받지 못한 경우, 가난, 과거에 받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와 유기 그리고 그로 인하여 최저임금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직업밖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성매매 업소에 팔리거나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성매매 여성이

경제적 생존이라는 이유로 성매매를 선택하였다면, 여기서 여성의 빈곤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하지 않고 성매매의 도덕성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 우리나라의 성매매 유형은, 전업형(집결지에 분포되어 있는 유리방), 주점식 전업형, 여관이나 여인숙, 기지촌과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겸업형,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간이주점, 다방, 노래방, 이용업, 마사지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나 실체가 들어나지 않는 인터넷형 등이 있다. 최근 성매매는 호텔, 오피스텔, 마사지숍, 풀살롱과 북창동식 주점, 단란주점 등 술집, 안마시술소, 대밭방, 키스방, 파티시방, 퇴폐 스크린 골프장, PC방 그리고 인터넷 성매매에 이어 대리운전을 겸한 이른바 꽃가마, 오피스텔 마사지방 등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해외 원정 성매매, 외국인 여성들의 국내 성매매 등 성매매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 일반적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들이 부도덕한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성매매가 합법적인 국가에서조차도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들은 자발적 노예와 다름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구조 하에서 성매매는 여성의 sexuality에 가해지는 통제와 억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발, 비자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 한편, 성매매 여성이 탈성매매 후, 성매매로 재 유입되는 주요 요인 중에는 주거의 불안정, 채무의 미청산 등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성매매 외 다른 일에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의 실패,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직업 부재 등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성매매 여성 개인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고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화, 성균관법학 22권 3호).

4.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과 달리 다양한 특수성을 띠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관련 범죄의 처벌이나 성매매의 근절을 위한 올바른 정책수립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와 비교하여 그 경로에 있어서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을 주로 매개로 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점이 그것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과의 교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채팅사이트 등은 이를 범죄에 이용하려는 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의사결정능력과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이 채팅사이트 등을 이용할 경우 여러 가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 랜덤채팅(Random Chatting) 애플리케이션이란, 불특정

이용자와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모바일 공간으로서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와 설정에 따라 무작위 연결, 거리순 연결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성별 및 나이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스마트폰이 가진 위치기반 서비스(LBS)와 빠른 통신 속도 등을 기반으로, 목적에 맞는 만남을 빠르고 쉽게 가질 수 있는 랜덤채팅의 장점이, 복잡한 절차는 과감히 생략하기를 원하는 청소년 세대의 특성과 결부되어 그 사용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에 대한 성의 상품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는 점, 앱 개발자가 영리추구를 위한 회원확보를 위하여 성매매조장 채팅방이나 성매매 유인글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점,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유인에 대한 거부감이 희박하다는 점,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른 실시간 랜덤채팅 앱에의 접근 용이성과 무차별적인 광고메일 등에 의해 청소년이 흥미 위주로 간단하게 랜덤채팅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점, 가출청소년의 경우 당장 필요한 생계비를 쉽게 마련하기 위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또래집단의 유대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청소년시기에 있어서 주변 친구들의 권유 및 앞선행위를 주도하는 선배들의 강요가 존재한다는 점 등이 결부되어 랜덤채팅을 통한 성매매의 유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 경로로서 인터넷, 특히 채팅을 통한 만남이 주로 활용되는 이유로는, 상대를 만나는 것이 쉽고 편리하다는 점, 상대를 파악하고 조건을 맞춰서 만날 수 있다는 점, 인터넷을 이용한 채팅 이외에 성매매에 접근하는 다른 방법을 모르거나 어렵다는 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만두기도 쉽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여자)청소년이 성구매 남성과 채팅을 통하여 익명성과 비대면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만남을 가지는 것은, 신·변종업소, 성매매집결지 등으로 대변되는 산업형 성매매와 달리 밀폐된 공간에서 청소년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의 연출이 쉽게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연결된다. 채팅이나 이후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성매매의 조건을 어느 정도 협의하고 직접적인 대면을 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사전협의를 제대로 이행되기를 매우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매매의 금액, 대가의 선 지급, 콘돔의 사용, 성행위의 시간 및 방법의 설정 등이 대체로 협의되지만, 상호간 대면 후 성구매 남성은 성매매대가의 지급을 지연하는 강력한 무기를 이용하여 콘돔의 미사용, 변태적 성행위의 강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위협적인 언행 등 자신이 원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오로지 성욕의 추구에 몰두하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상대 남성이 성구매 남성으로 위장하여 함정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일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은 항상 대상 청소년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대상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행동을 하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래 (남성)포주 또는 (성인)알선업자 등이 등장하게 되어 조직화되는 현상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 성매매가 개인형 성매매의 형태에서 산업형 성매매의 형태로 전이되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성구매 남성으로부터의 위협에서 대상 청소년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등장하는 중간알선업자들은 대상 청소년의 탈성매매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하루에 달성해야 하는 성매매 할당량의 강요, 성매매대금의 불공평한 분배, 대상 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성매매 강요 등의 형태로 오히려 더욱 심각한 착취에 빠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박찬걸, 소년보호연구 제30권 제1호).

5. 국제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성착취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관련 국제 선언에 의하면, 성매매를 포함한 상업적 아동 성착취는 현대판 노예제에 다름 아니고, 아동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한다.

《‘상업적 아동 성착취’ 개념은 성매매행위와 아동 포르노그래피 행위, 이를 중개·알선하는 온갖 형태의 포주행위, 성매매행위와 아동 포르노그래피 행위를 제공할 아동의 인신매매 행위 등 연관성 있는 행위들을 일련의 묶음으로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개발된 ‘조작적 용어’(manipulative term)이다. ‘상업적 아동 성착취’로 포괄될 수 있는 행위들의 공통분모는 이들 행위가 모두 ㉠ ‘아동의 몸’을 성적 대상(sexual object)으로 삼고 더 나아가 ㉡ ‘아동의 몸’을 상품(commodity)으로 간주하고 상품 판매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거나 부당수익을 획득하는 점에 있다. …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는, 아동이 육체적·심리적·영적·도덕적·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심각하고, 평생에 걸치는 기간,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결과(여기에는 조기임신, 모성사망, 부상, 성장부진, 신체적 장애와 HIV/AIDS와 같은 성병이 포함된다)로 귀결될 수 있다. 아동이 유년기를 즐기고 생산적이며 보람 있고 고귀한 삶을 누릴 권리는 심각하게 손상된다”(‘선언’ 제9문단), … “부패와 결탁, 법의 부재, 혹은 부적절한 법, 느슨한 법 집행, 그리고 아동에게 미치는 해로운 충격에 대한 법집행 담당자의 인식부족도 직·간접적으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초래하는 요인들이다”(‘선언’ 7문단), “사회의 모든 층위에 있는 광범한 개인과 집단들이 이 착취적 실천에 기여하고 있다. 착취자의 부류에는 중개인들, 가족구성원들, 비즈니스 부문, 서비스 공급자, 수요자(고객), 지역사회의 지도자, 공무원이 포함된다. 이 사람들은 무관심, 피해아동이 겪는 해로운 결과에 대한 무지, 혹은 아동을 경제적 상품으로 간주하는 태도와 가치판단의 영속화를 통하여 착취에 기여한다”(‘선언’ 제8문단)》(소년 성보호법과 성매매 방지, 심희기, 형사정책, 제14권 제2호).

《“예의 현 시대적 유형에 대한 유엔 워킹 그룹” 아동 성매매의 희생자인 아동은 지울 수 없는 심리적 감정적 악몽을 경험한다고 본다. 성매매를 경험하는 아동은 단지 성적인 대상으로서 종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존엄성에 대한 완전한 상실을 유발하며, 나아가 신체적 상해, 질병, 고문, 구타, 노예화되는 비인간적 취급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은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결과적으로 성매매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거나, 약물중독자, 비행자 등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많은 경우 아동 기부터 이미 HIV 바이러스와 AIDS에 감염될 확률이 지극히 높은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아동의 성매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차선자, 아세아여성법학 8호).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성매수남의 성욕 해소라는 본성에 호소하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성매매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성매수남의 범죄행위이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존재가 아닌 것이다.

사례 1의 담당 경찰은 여전히 성매매를 암암리에 허용하던 시대로 착각하고 겁녀와 을녀를 정조를 지키지 못해 보호할 필요가 없는 여성으로 인식하였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겁녀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고, 알선자로 인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고 심지어 알선자의 성폭력 피해자이다. 담당 경찰은 겁녀의 피해 내용을 듣고 현장에 있던 알선자를 입건하고 피의자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담당 경찰이 성매매로 인한 금전 관계로 사안을 단순 정리하고, 겁녀와 알선자를 분리하지 않는 등 겁녀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겁녀로 하여금 신고 내용을 설명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고, 겁녀에게 알선자가 작성한 각서 하나 들려 귀가시킨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형사 처벌 대상이다.

또한 범죄수사규칙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가해자에 동조하거나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명시하였으나(제 180조), 담당 경찰은 알선자의 의사만을 확인한 후 겁녀에게 변제한다는 각서만을 제공하게 하고 귀가시켰으므로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여 겁녀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고 할 것이다.

범죄수사규칙

제180조(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경찰관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다른 경찰관서 관할이거나 피의자 특정 곤란, 증거 부족 등의 사유로 사건을 반려하는 행위
2.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 사실을 축소 또는 부정하는 행위
3. 가해자에 동조하거나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는 행위
4.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서로 대면하게 하는 행위(다만,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의 위 각 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마. 성매수남으로 신분을 위장한 수사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함

사례 2의 정녀와 사례 3의 병녀는 상대 남성이 경찰인지 모른 상태에서 일반 성매수남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났다. 위 두 사례 모두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마치 성매수남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만났고, 병녀와 정녀를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이나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체포하였다(정녀는 담당 경찰이 적용 법률을 청소년성보호법인지 성매매처벌법인지 알지 못하면서 장기간 병녀를 대기시키고 신원을 밝히라고 으박질러 무서웠으나 적용 법률도 모르는 경찰을 신뢰하고 신원을 밝힐 수 없었다고 진술함).

그러나 세간에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랜덤채팅이나 조건만남 광고글을 성매매를 할 여성이 직접 게시하거나 알선업자가 게시하였더라도 성관계를 하기 위한 장소에서 성매수남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성매매를 할 여성이 유일하다. 성매수남이 성매매 이외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알선업자나 포주를 성매수남이 만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 2와 사례 3에서 경찰은 성매수남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성매매를 할 여성을 만났다. 이와 같은 신분 위장으로 경찰은 어떤 범죄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인지,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성매수남으로 신분을 위장해서는 성매매를 할 여성만을 만날 수 있고, 특히 상대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일 경우 형사 처벌 대상도 아니므로 경찰이 얻을 수 있는 증거나 범인에 대한 정보는 상정하기 어렵다.

사례 2와 사례 3 모두 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가 시행되기 이전의 함정수사 수법인데, 이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거나 성착취를 예방하는 수사로서 적합하지 않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처벌받아야 할 성매매 여성으로 보고 있다는 경찰의 잘못된 시각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는 증거 수집이나 범인 검거를 위하여 가능한 일이므로 가해자인 성매수남으로 위장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위장하여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합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합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753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합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합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참조)』라고 하여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례 2와 사례 3은 경찰이 성매수남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필요성은 없고, 사례 3의 경우 성매매 광고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 성매매의 범의를 가졌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판례로써 허용되는 수사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할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고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례 2와 사례 3의 경찰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하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로써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신분비공개수사가 가능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을 때 범죄 저지 및 범인 검거 또는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신분위장수사가 가능하므로, 성매수남으로 위장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검거하거나 체포하기 위한 위장수사는 더 이상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잘못된 수사 관행을 즉각 타파하여야 할 것이다.

바. 장시간 대기 및 심야조사 제한에 위반함

범죄수사규칙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제61조), 사례 2의 병녀와 사례 3의 정녀는 위 규칙을 위반하여 경찰서에서 보호자나 신뢰관계인 없이 3시간 이상 대기하게 되었으므로 그 동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느꼈을 불안, 두려움 등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심야조사는 금지되어 있으나(수사준칙 제21조), 사례 2의 병녀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새벽 1시에 시작하였다. 사전에 심야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병녀나 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심야조사 동의를 하게 하였으므로, 위 심야조사 동의는 합법적이고 적절한 동의라고 인정될 수 없다. 또한 동 준칙 제21조 제2항에 명시된 심야에 부득이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1시에 시작된 조사가 새벽 4시를 넘겨서야 종료되었다. 이것은 심야조사 제한에 위반된 수사인 것이다.

범죄수사규칙

제61조(출석요구)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및 같은 법 제221조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36조(심야조사 제한)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심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심야조사의 내용 및 심야조사가 필요한 사유를 소속 경찰관서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

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사. 가명 조사 거부 당함

사례 1의 갑녀는 피해자 진술시 가명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므로 가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담당 경찰의 견해였으나, 범죄수사규칙에 의하면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설명을 들은 이후에야 내부 논의를 거쳐 가명 사용을 허가하였다. 이 역시 성폭력과 성매매를 이분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보호 대상이라는 인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최초 갑녀의 가명 조사 요구시 담당 경찰이 가명 조사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범죄수사규칙

제176조(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경찰관은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경찰수사규칙」 제79조제1항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진술조서(가명)에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피해자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피해자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 보고

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하고, 조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별지 제 109호서식의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③ 피해자는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 법률에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른 피해자 등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가명조서등 불작성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79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①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 보호자 통지에 대한 규칙이 필요함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물론이고 성폭력 피해자인 피해아동·청소년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호자에게 알린다는 경찰이나 가해자의 말을 협박으로 인식한다. 피해를 입거나 비행에 연루된 아동·청소년 모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스스로의 입을 통해 보호자에게 알리기 전에 제3자에 의하여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고 거부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경찰이 업무 처리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이므로 보호자에게 알린다고 설명하는 것조차 아동·청소년이 감당하기 두려운 일로 여겨지므로, 일선 경찰이 임의로 보호자에 대한 통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보다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경찰수사규칙은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 결과 통지에 대하여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마치 법정대리인이 있는 아동

·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통지한다면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확하지 않은 보호자 통지 사항으로 아동·청소년이 자신에게 일어난 범죄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00호서식부터 별지 제102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④ 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⑤ 수사준칙 제53조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통지 요구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불송치 통지요구서에 따른다.
- ⑥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5호서식 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⑦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등에게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4조 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서에 기재해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 ② 고소인등은 법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6. 나가며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성폭력과 성매매로 구분하지 않고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고, 이를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형사 처벌하지 않고, 이들을 보호·지원하도록 개편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만 하더

라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대상 아동·청소년이 삭제되고 1년이 지난 지금 수사기관의 인식 변화가 매우 더디다. 그러는 사이에 성매수남이 더욱 은밀하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시간과 돈을 들이고 있고 그만큼 아동·청소년은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돼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를 이용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만 검거하거나 입건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도 청소년성보호법상의 피해아동·청소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종류의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인식을 빠르게 전환시키고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더라도 성매매 산업에 고착화되지 않도록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발제 2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조진경 대표
(십대여성인권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



I. 들어가는 말

디지털 매체를 매개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는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은 해마다 더욱 심화되었지만, 한국 사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¹⁾ 급기야

1) 2014년/ 김해여고생 살해사건: 2014년 김해 여고생 A가 가출 한 후 20대 남성 3명과 15살 또래 소녀 4명에게 성매매 강요, 구타와 학대를 당하다 숨지자, 증거인멸을 위해 얼굴에 불을 지르고 땅에 묻고, 시멘트를 부어 범행을 은폐하려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 범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고, 특히 가해자들 중 십대 소녀들이 있었고, 이들이 A의 죽음에 상당히 가담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전체를 분노하게 했고, 소년법 폐지 주장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가해 소녀들이 A와 같이 같은 20대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구타와 협박 등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들 중 한 소녀는 도망나와 모친과 함께 경찰서에 가해자들을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성매매를 했다고? 그러면 너도 처벌받는다”고 하는 등 모친 앞에서 공공연하게 성매매한 사실을 밝히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여 고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 이때 신고가 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A의 사망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2015년/ 관악구 모텔 14세 소녀 살해 사건: 2015년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성매수자가 스마트폰 채팅앱 ‘졸옴’을 통해 14세 소녀를 조건만남으로 만나 성매수 한 후 소녀의 입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1:1 성매매로 알려져 있어, 자발적이라고 여겨지던 상황에서 알선범죄자들의 존재를 정확하게 드러내준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범죄의 처참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채팅 앱을 통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알선한 알선 범죄자 3인은 인터넷사이트에 가출소녀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내고 면접을 본 후 전국을 돌며 아동·청소년들을 이동시키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알선자 3인은 모텔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그 중 1인은 죽은 14세 소녀를 사랑한다며 꼬여 동거를 하고 핸드폰 어플을 통해 성매수자와 조건을 합의한 후 차량으로 소녀를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대금을 갈취하였다.

2016년/ 만 13세 지적 장애 ‘하은이’를 성매수하여 형사처벌 받은 성매수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년 엄마의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자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가출하기로 결심한 만 13세 지적장애아동인 ‘하은이’는 엄마가 심심할 때 채팅하라고 알려준 채팅 앱 ‘친구 000’를 통해 ‘재워줄 사람’을 찾았고, 그 후 성인 남성들에게 1주일 동안 성폭력을 당했다. 어렵게 ‘하은이’를 찾았지만 이상증세를 보이는 하은이를 성폭력 피해로 신고하였지만, 가까스로 찾은 6명의 가해자들은 강제나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폭력으로 수사되지 않았고, 성매매로 수사 진행되었으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매로도 기소되지 않았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가해자들을 항고하고 즐기게 성폭력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가해자들은 전부 성매매로 기소되었다. 2015년 동안 가해자 5인은 성매수로 처벌받았고, 이에 2016년 ‘하은이’ 측에서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같은 법원에서 ‘하은이’가 또 다른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므로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고, 더욱이 사건 초기 만 13세에 불과한 지적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성매매로 수사한 점이나 성매매 피해지원 시스템의 문제, 현행 법률인 아청법의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 사건이었다.

2017년/ 성매매 알선된 여중생의 에이즈 감염 사건: 2016년 알선자들에 의해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당한 여중생이 성매수 과정에서 에이즈가 감염 된 사실이 2017년 밝혀진 사건이다. 회원 가입 없이 익명으로 채팅을 주고받고, 기록이 오래 남지 않는다는 채팅 앱의 특성으로 이 여중생을 성매수 한 남성들의 신상파악에 실패했고, 여중생을 성매수한 가해자들 중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는지 파악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전체를 경악과 공포에 몰아넣은 사건이다.

2020년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전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그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관련한 다양한 입법²⁾과 정책³⁾이 추진되었

2019년/ 세계최대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 영상물 공유, 유통, 판매 사이트 “Welcome to Video”를 운영한 ‘손정우’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사건: 2019년 10월, 미국 법무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유통, 판매했던 세계 최대 규모의 다크웹 사이트를 해외 32개국과 공조수사 한 후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2018년 3월,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가 한국인(손정우)으로 밝혀져 검거된 후에도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 영상물을 유통 및 소지한 38개국의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고 진행한 결과, 검거된 337명의 이용자 중 223명이 한국인 이용자임이 밝혀졌다.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하여 n번방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 사건이다.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한다. 회원 규모는 최소 박사방 ‘맛보기 방’ 회원 1만명, 박사방 유료회원 3만명 내지 수만명으로 추정한다. 피해자 숫자는 ‘박사방’의 경우 확인된 경우만 최소 74명, 그중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이 16명이다. 출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N%EB%B2%88%EB%B0%A9_%EC%82%AC%EA%B1%B4

- 2)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 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매수된 모든 아동·청소년을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이 삭제됨),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규정 신설됨.
 -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광고, 소개, 시청, 구입, 소지행위까지 처벌대상에 포함하여 처벌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예비, 음모죄가 신설됨. 2020년 12월에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되는 규정이 추가됨.
 -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었고 강간 등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됨.
2.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2020년 6월 개정됨.
 -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불법 촬영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권한이 없어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차단에 어려움이 있는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 촬영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2020년 6월 신설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 3) 1. 여성가족부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민청원 답변, 여가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c126fe86bfe7488e834c2cdc82f178e0.hwp&rs=/rsfiles/202111/>
2. 2020. 4. 23.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규율하는 법률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본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음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별하여 강도상해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 아동·청소년과 동일하게 「소년법」⁴⁾에 의해 보호처분 하여왔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범죄는 대부분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시작은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물색하여 접근해서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통해 사진을 요구하고, 사진을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유포협박한 후, 더 심각한 사진, 영상을 제작하도록 강요한 후, 성폭력/성매매로 이어지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진화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통계청·경찰청 청장, 중소기업 ombudsman 참석)에서 심의, 확정함

-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 ①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②합성·편집물(딥페이크 등), ③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④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 포괄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목표하에, 4대 추진전략으로 ①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②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③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④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 함.
 1. 처벌의 실효성 강화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처벌 강화,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양형기준 마련, 범죄수익 환수 강화, 신상공개 확대
 2.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잠입수사 도입, 신고포상금제 도입
 3.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소자·구매 등 수요자 처벌,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4. 피해자 지원 내실화
피해자로 규정,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강화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
- 4)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감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소위 자발과 강제라는 도식을 통해 피해자를 걸러내고 강제적이었다면 피해자로 보호조치하고, 자발적으로 보여진다면 범죄가담자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2분화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자들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용돈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가가 있는 것처럼(성매매 정황으로) 상황을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신고를 피하고 비난을 최소화하는 수법을 사용하기 일쑤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성을 사는 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는커녕, 도리어 성범죄자들에 의해 학교나 부모에게 알려졌거나, 너도 처벌받는다는 등의 협박을 받게되어 신고자체를 막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는 아동·청소년이 대가를 바라고 성을 사는 행위의 자발적인 대상이 되었다고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가장 가까운 보호자까지도 자녀를 피해자로 보지 못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을 비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더욱 심각한 피해 상황에 놓이게 하여왔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여성·시민·사회·아동·청소년 지원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였지만 번번히 정부와 국회의 반대와 미온적인 태도에 의해 법률 개정은 좌절되지만 하였으나, n번방 성착취 사건이 알려지고 전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결국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로 재정의하게 된 것이다.⁵⁾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담소 및 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과는 달리 특화된 발견·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

2020년 11월 20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모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 신설과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허용 특례 규정이 신설되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입법적으로 그동안 소리 높여 외쳐왔던 수많은 법률들이 한꺼번에 제/개정되는 등,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변화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 같은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법이 개정되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여 과거의 관행대로 아동·청소년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하거나⁶⁾, 수사관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알선업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고⁷⁾, 함정수사를 통해 발견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매매 광고 혐의로 입건하는 등 법개정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공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등 아동·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관조차도 법개정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피해아동·청소년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6호).
- 나. 대상아동·청소년의 정의 규정과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7호,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 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제13조제3항 신설).
- 라.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제20조제3항제1호).
- 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여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38조).
- 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 신설).
- 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호).

<https://law.go.kr/lslInfoP.do?lsiSeq=218019&lsId=&efYd=2020112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법제처>>

- 6)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는커녕 피의자로 조사하고, 범죄자 취급한 수사기관(수사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십대여성인권센터 2021. 8. 31. 보도자료 참조
http://www.teen-up.com/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1&idx=3636&board_md=view
- 7)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는 목살하고 범죄 수사조차 하지 않은 수사기관을 고소·고발한다.”, 십대여성인권센터 2021. 5. 11. 보도자료 참조
http://www.teen-up.com/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1&idx=3593&board_md=view

비난과 낙인의 대상으로 대하는 등 개정된 법의 실효성은 매우 낮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이 피해자이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게 하여 법은 사문화되고 현실은 법 개정 전의 상황이 계속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관련한 다양한 입법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들은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으며, 디지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서 보호·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세계 속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피해 속도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성범죄자들의 범행 수법은 갈수록 악랄해지고 교묘해지며, 피해아동·청소년의 연령은 갈수록 저연령화되는 것이 현실적 문제이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은 온·오프라인 속에서 심각한 성착취 피해에 노출되며, 피해를 받고 있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법률지원단과 함께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이 삭제되고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한 지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II.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이 삭제되기까지...

(십대여성인권센터⁸⁾의 활동을 중심으로)

1. 2012년도-2013년도

2012년 12월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에서 시작한 ‘사이버포래상담사업’을 이어받아 비영리민간단체 ‘사이버포래상담실’을 설립하였다. 2013년 11월 ‘십대여성인권센터’로 단체 명칭을 변경하고, 12월에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의료·심리지원단⁹⁾이 출

8)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십대/여성/사이버 성착취 피해지원과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에 대한 통합적인 예방, 지원, 치유 활동과 성착취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인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십대여성의 성인권 향상에 기여합니다.

9)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의료·심리지원단은 2013년 12월 2일 발대식을 열고, 법률지원단 10명, 의료지원단 11명, 심리지원단 13명, 총 34명으로 출범하였다. 2021년 현재, 법률지원단 53명, 의료지

범하였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2013년도부터 ‘사이버포래상담사업’¹⁰⁾과 ‘대상아동·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¹¹⁾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수탁하여 운영하였다.

원단 9명, 심리지원단 5명, 총 67명이 활동하고 있다.

10) 사이버포래상담사업: 2014년도 리플렛에 사이버포래상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365일 24시간 쉼없이 거래와 조건이 오고가는 성매매 집결지와 다름없는 사이버공간에서 포래상담원이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펼치면서 성매매 조기 개입과 예방은 물론 성구매자와 알선·조장세력에 대한 신고활동으로 수요차단운동까지 전개합니다. 목표는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피해예방과 적극적인 조기개입, 사이버포래상담원 발굴 및 양성: 십대를 위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11) 2013년도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7조, 동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추진되었다.

제27조(소년부 송치) ① 검사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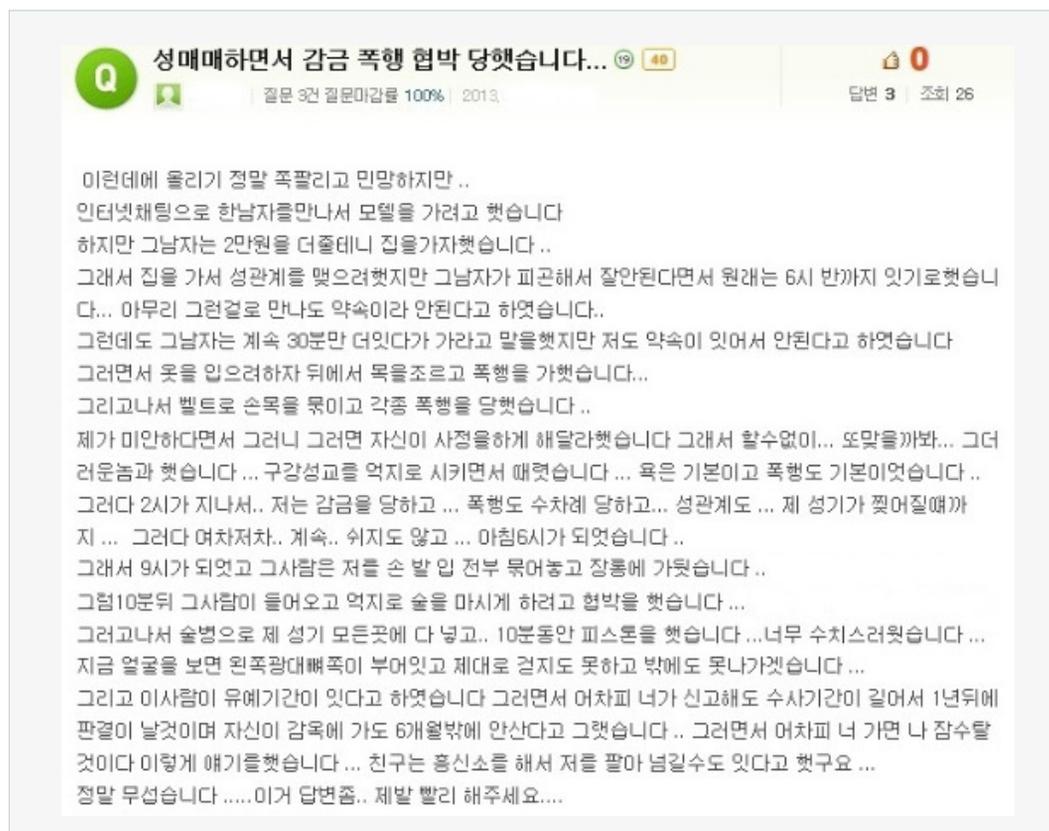
제3조(대상아동·청소년의 송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사법경찰관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2. 7. 31., 2012. 9. 14.>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2.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5.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

제4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① 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게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을 마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40시간 내외로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② 교육과정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이하 “교육수탁시설”이라 한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수탁시설의 장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중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상아동·청소년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질병치료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가. 주요사건

(1)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담당검사인 성폭력 전담검사에 의해 체포영장이 반려되어 성범죄자가 도주한 사건



2013년 0월, 아동·청소년 ‘가’(만 16세)는 성매수자(33세)로부터 성폭행, 감금 등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지식인에 올려놓았고, 이것을 본 센터가 연락을 하여, ‘가’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경찰 수사 도중 성범죄자가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묻자, 경찰은 수사중 일어난 일이라며 답변을 거부하였다. 이에 본센터는 진상규명, 엄중수사, 성범죄자에 대한 지명수배,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기 위해 경찰청, 국민신문고,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1)-1. 이 사건의 쟁점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상황에서 성폭력, 감금, 폭행 등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성폭력 전담 검사(여성)는 아동·청소년이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성폭력 등 피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 받고 SM play를 전제로 조건만남을 했던 것인지를 의심하고 체포영장을 반려, 보강수사를 지시함.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경찰측에서 토로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성매매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여 체포영장을 반려하여 성범죄자가 도주한 사건이 발생함.

- ① 성폭력전담검사의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
- ② 수사기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성폭력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과 대응
- ③ 성매매의 대상아동·청소년 ‘가’는 법률지원을 위해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의자이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떼는 것도 부모와 동행하지 않으면 진단서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 이처럼 미성년자이므로 진단서 정도도 부모와 동행하여야 발급이 되는데, 모순적이게도 성매수의 대상이 된 결정은 미성년자가 했으므로 미성년자에게도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 ④ 이 사건은 형사사건 종료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형사사건과 형사소송 진행 중, 양친이 모두 사망하였다. 미성년자이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본인이 직접 제기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센터 대표가 후견인 자격을 취득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다.

→ ‘아청법’ 상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니고, 대상아동·청소년임. 대상아동·청소년은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나. ‘아청법’ 개정 대응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 ① 사이버포래상담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탁틴내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단체들이 초기 모임 결성, 방향성과 ‘아청법’ 개정초안

작성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¹²⁾

- 워크숍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현행 아청법상 대상 청소년 문제를 중심으로.

2013년 7월 15일(월) 14:30-18:0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

- 워크숍2: “대상청소년 개념 삭제 이후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해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가”

2013년 10월 28일(월) 오전10시-, 탁틴내일 4층

12) 1차 워크숍 제안서

주관 단체: 사이버대리상담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탁틴내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참가제안단체: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포함한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11개소, 전국시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97개소를 포함한 청소년관련단체, 성매매피해상담소 26개소와 청소년지원시설 14개소를 비롯한 성매매관련단체, 청소년성문화센터 40개소, 성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 아동센터 8개소, 원스톱지원센터 15개소,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7개소 등

제안 취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 6. 19. 자로 전부개정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이 당할 수 있는 성범죄 전반에 대한 피해상황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현행 아청법은 여전히 성매매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특정하여 교육과 보호관찰 등의 명령을 강제부과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아동이용음란물에 관한 논쟁에서 보여지듯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고,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동일한 문제의식을 느낀 관련단체들이 몇 차례 선행모임을 거쳐 아청법 전면개정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범죄를 성착취 범죄로 규정하였다. 기존 성을 사는 행위를 팔레르모 의정서 기준을 목적으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규정하였다. 성착취에 이용되는 구체적인 아동의 보호뿐만 아니라 성착취를 부추기거나 용인하지 않도록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성인, 기업,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담을 수 있도록 법의 목적을 수정하였다.
-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관련범죄는 2013. 6. 19. 자로 시행되는 전부개정에서 많이 보완된데 반해,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관련범죄는 여전히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범죄행위자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청소년과 구별되는 대상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을 피해자로 정식 명명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보호조치, 전문단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3) 기업과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명시하였다.
- 4) 성착취 목적의 아동·청소년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인터넷과 온라인상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현실화하였다.
- 5)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내용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였다.
- 6)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한 조치를 위해 정확한 관점과 내용을 제시하는 등 아청법 전반에 걸친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UN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선의 이익, 인신매매방지선택의정서, 아동 성매매, 인신매매,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리오 선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이에 선행작업을 함께했던 주관단체들은 위의 내용들을 관련 단체들과 공유하고 이후 논의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워크숍을 제안한다.

(2) 2013년도 국정감사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증인으로 출석: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현황과 지원대책에 관한 질의
2013년 11월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 조진경 대표/사이버포래상담소

2. 2014년도~2018년도

- 2014년도부터는 PC방을 중심으로 한 채팅사이트 등 유선 통신망을 통해 성매수 제안이 이루어지던 방식에서 무선 통신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수 제안 방식으로 성매수 알선 매개가 빠르게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사이버상담의 접근 방식 또한 새로운 성매수 알선 매체에 따라 변화가 필요했다.
- 2015년도는 대상아동·청소년 개념 삭제, 보호처분 규정 삭제, 통합지원센터설치 규정 신설의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남인순 의원실을 통해 최초로 발의된 해이다. 2015년도에는 성매수를 알선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다종다양해졌으며, 수익이 크다는 점을 알고 성매수 알선 조직들이 아동·청소년을 인터넷 상에서 ‘가출한 사람 재워줄게’라는 형식으로 모집, 채용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조직적으로 성매수로 알선하는 형태로 발전한다. 한편, 피해아동·청소년의 유형이 크게 변화하는데, 유선통신이 주요 매개로 사용됐을 때는 가출 아동·청소년이 성매수의 고위험군이었던 반면, 무선통신이 주요 매개가 되면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성매수의 대상이 되는 형태로 피해아동·청소년 유형이 변화한다. 동시에, 성범죄자의 경우도 단순 성매수자였던 자들이 성매수 과정에서 이용한 아동·청소년을 다시 또 다른 성매수자에게 알선하는 형태로 범죄자 유형과 수법 또한 변화하였다. 과거에는 성매수 알선자들이 특정한 직업군을 이뤘다면, 알선의 매개가 스마트폰이 되면서 성매수 알선자 역시 단순 성매수자들이 알선을 업으로 하게 되는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나아가 성매수자, 알선범죄자, 성매수에 이용되는 피해아동·청소년의 저연령화 현상도 가속화되었다.
- 2016년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매개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가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익명성, 정보의 휘발성, 최소한의 저장기간 등)으로

인해 범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거기에 더하여 성매수자들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이 최소한의 증거조차도 확보할 수 없도록 캡처기능을 막는 기술적 조치를 함으로써 성범죄자들에게는 최고의 안전성과 최상의 성착취 환경이 제공되었다. 검거될 염려가 전혀 없음을 수년간 학습한 성매수 범죄자들은 연령과 직업에 상관없이 확장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아동·청소년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성매수 등 성착취 범죄를 발견, 상담,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한 상태에서 늘어가는 피해아동·청소년과 누적되는 상담은 십대여성인권센터 기존 지원 체계로는 역부족이었다. 사이버포래상담사업을 통해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은 하지만, 보호·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률, 의료, 심리상담과 부모상담, 주거, 학업, 일자리 연계 등의 직접/연계 지원을 할 수 있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다.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사실상 대상아동·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강제교육기관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은 가능하지 않은 구조였으며, 의료지원만 사업비로 일부 지원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기존 아동·청소년 지원 시스템에 연계를 하여야 했으나, 해바라기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성매수 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이 발견되면 대상아동·청소년으로서 처벌의 대상이지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그나마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한 기관은 전문성의 문제로 본 센터로 연계하였다. 성폭력상담소 역시 피해아동·청소년의 경우, 성매매피해와 성폭력피해가 복합적으로 중첩돼 있어서 성폭력상담소로의 연계도 어려웠으며, 성매매피해상담소 역시 성매매방지법 중심의 피해자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디지털 매체를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들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사이버포래상담사업을 통해 발견된 피해아동·청소년을 각 지역의 지원기관에 연계하여도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기관들이 많고, 디지털 성착취 피해의 특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연락이 끊어지거나 다시 본 센터에 피해아동·청소년이 연락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성매수 범죄의 피해를 입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으로 ‘아청법’은 개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법개정안에 포함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려고 노력해왔던 본 센터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노력을 더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산나눔재단의 비영리 기관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Partnership On’의 혁신리더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동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대상 전문 상담소 모형 프로젝트 S·N·S(Stop & Start)’를 운영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사이버포래상담사업을 통해 발견, 예방, 신고, 홍보 등의 초기접근 시스템과 법률·의료·심리상담 등의 직접지원, 주거, 학업,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피해아동·청소년의 필요에 따른 보호·지원이 가능한 상담소 시스템 그리고 교육과 부모상담, 사전사후지원을 할 수 있는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시스템, 이 세가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피해아동·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2017년부터 피해 양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기술의 진화가 가속화되고 각 매체들이 융합되기 시작하면서, 사진/영상 유포 협박, 성착취 영상 제작 강요 등의 피해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개인tv어플을 통해 유튜브 개인방송, 인터넷 개인 방송 등을 통한 성착취 정황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전무하였고, 진화되고 있는 범죄와 동시에 심화되고 있는 피해를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발적이라 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보호받기는커녕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벌어졌다.
- 2018년, 대상아동·청소년 개념 삭제, 통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 가중처벌, 성매매 범죄를 포함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확대 등의 규정이 포함된 ‘아청법’ 개정안(대안)이 국회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였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아청법’ 개정안(대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됨으로써 ‘아청법’ 개정은 20대 국회 회기 중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3년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던 십대여성인권센터 상담소 기능은 프로젝트 마감과 함께 종료될 위기였다. 상담소 기능이 종료되어진다면 더 이상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아동·청소년들에게 법률·의료·심리 등 직접적인 지원은 제공할 수 없었다. 신규 상담은 더 이상 못받더라도 지속 상담마저 정리해야 할 상황이었다.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사업비를 비영리 민간단체로써는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본 센터는 ‘성매매방지법’ 상의 성매매피해상담소로 등록하여 상담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가. 주요사건

(1) 일명 ‘착한삼촌’ 사건: 지역에서 가출 또는 거리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성매수·성매수 알선 등을 일삼고 있는 지역주민, 일명 ‘착한삼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2011년부터 거리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던 한 기관(EXIT)이 지역 내의 남성 어른들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 또는 유사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으나, 피해아동·청소년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 신고할 수 없었다. 2013년 0월경,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나온 ‘성매매 신고포상금 제도’ 리플렛을 홍보하기 시작했고, 이를 본 청소년들이 자신과 주변 친구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신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와 EXIT는 성범죄자 개인처벌을 넘어서 지역사회 내에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에 대해 알리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아동·청소년들에게도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며 2014년 0월, 피해아동·청소년 4인과 함께 집단소송을 진행하였다.

(1)-1. 이 사건의 쟁점

가출이나 거리를 떠도는 아동·청소년이 자주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잠잘 곳과 식사, 담배 등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환심을 산 후, 성범죄자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피해아동·청소년들에 의해 진술되었으나 성폭력으로도 성매매로도 수사 접수할 수 없었다. 검찰청을 통해 기획 수사를 의뢰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건.

- ①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거리를 떠도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식사나 담배 등을 제공하며 성적착취를 하였음에도 아동·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드러내었다 하여 성폭력이 아니라고 한 수사기관, 성매매로 신고하려고 하여도 아동·청소년들이 보호처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고소 조차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 ② ‘성매매 신고포상금 제도’는 성매수 범죄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였음에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포상금 수금을 목표로 했다는

점을 문제삼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였다.(정부 각 부처가 각각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례, 정부부처에서도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의미를 홍보할 필요가 있음)

- ③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성범죄자가 지역사회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착한삼촌’으로 행세하여 왔고, 수사기관이나 지원단체를 수시로 드나들며 아동·청소년들의 보호자 노릇을 하여왔다. 피해아동·청소년의 규모가 상당히 컸지만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되자 아동·청소년들 사이에서 편이 나뉘어 오히려 피해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비난과 폭행이 가해지기도 하였다.

→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폭력과 성매매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이 일반적임에도 법률이나 수사기관은 강제=성폭력, 대가성=성매매로 이분화시켜 피해를 나누고 있다는 점(성매매의 경우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 됨)이 문제가 되었고, 성폭력/성매매 피해가 복합적일 경우 신고할 곳이 어딘지 몰라 여기 저기로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 성매수자가 아동·청소년을 ‘조건’ 사기로 고소한 사건

2015년 0월 ‘나’(만17세)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성매수남을 만나 모텔에 갔지만 남성이 씻는 사이 성매수 대금을 갖고 도망나왔다. 이에 성매수남이 조건사기로 아동·청소년을 신고하였다.

(2)-1. 이 사건의 쟁점

아동·청소년들이 가출한 후 대개 ‘가출팸’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성매수자들이 성매수 행위를 하였다라는 이유로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꺼리는 악점을 이용하여 성매수자에게 조건(성매매)을 하겠다고 만나 돈만 받고 도망치게 하거나 ‘가출팸’의 다른 구성원이 성매수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 폭행하여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이 사건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나’가 7명의 알선자들에게 성매매 강요/알선을 당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조건만남을 강요당하던 중,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자 알선자들은 ‘나’에게 조건사기를 하라, 그래도 성매수남이 신고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시하여 지시대로 한 상황이다. 그러나 성매수남은 ‘나’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조건사기’로 신고하였다.

- ① 성매수남이 미수로 그쳤지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사기’ 고소가 받아들여졌으며, 동시에 고소인(성매수남)의 범죄행위를 인지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사동석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인지수사를 하라고 요구하였지만 수사관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로 따로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병합되지 않았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상담원의 책임하에 반성문을 쓰고 기소유예되었다. 성매수남에 대한 고소건은 아동·청소년을 성인으로 알았다는 진술을 받아들여 무혐의 불기소되었다.
- ② 피해아동·청소년 ‘나’는 당시 성폭력 피해로 해바라기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성매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였을 때,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성매매의 경우 해바라기센터의 지원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본 센터로 연계하여 사건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기존 아동·청소년 피해지원 체계로는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③ 조사동석 과정에서 본 수사관들의 태도는 아동·청소년을 빙 둘러 쳐다보면서, “요즘 애들은 화장하면 청소년인지 모른다.” 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매수자를 두둔하고 아동·청소년을 힐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수사시작 전부터 수사관들의 편향적 시각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수사관들은 본인들이 하는 말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 듯 하였다.

→ 당시 ‘아청법’ 상에서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만 하여도 처벌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사회적 분위기가 성매매를 일으키는 주체를 아동·청소년으로 보고 있었고, 성인 남성들의 성매매에 대해 사회 전체가 얼마나 허용적인지 알 수 있다. 성인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매매를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이 조심해야 하는데, 아동·청소년이 먼저 제안을 했으니 그 아동·청소년을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적 분위기였고 그러한 인식은 여전한 거 같다.

(3)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목표로 접근하여 성매수한 후 차량 블랙박스 카메라로 성매수 장면을 몰래 찍고, 그 영상을 피해아동·청소년의 SNS에 올려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사건

2015년 0월 아동·청소년 ‘다’(만17세)는 호기심에 조건만남을 구하는 글을 어플리케이션에 올리고, 학생이냐고 계속 물어보는(학생인걸 알면 훨씬 조심할 것으로 생각하

였다고 함) 성인 남성을 만나 남성의 차안에서 성매매를 하였다. 계속 연락이 오는 남성의 연락을 피하자, 성매수남은 ‘다’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어플리케이션에 올렸고, 깜짝놀란 ‘다’는 다시 연락을 했다. 성매수남은 조건만남 영상이 본인의 차 블랙 박스에 자세히 잘 찍혔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해주면 영상을 지워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3)-1. 이 사건의 쟁점

성매수남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목표로 한 정황이 드러난 사건으로, 본 센터가 경찰과 동행하여 ‘다’와 성매수남이 만나는 현장에서 성매수남을 긴급 체포하였다. 구속이후 수사 중 성매수남의 핸드폰에서 다른 여성들의 영상도 21개 이상 발견되었고, 이 중 17명이 아동·청소년으로 밝혀졌다. 그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한번도 신고가 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가 협박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성매수남은 이를 알고 일부러 아동·청소년을 목표로 하여 조건만남을 구했던 것이다.

- ① 이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발견했음에도 더 이상 수사를 확장하지 않고 피해아동·청소년 ‘다’로 수사를 한정시켰다.
- ② 부장검사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성매수범은 무자비하게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하지 않겠다는 피해아동·청소년의 답변에도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지와 본 센터에 갑자기 찾아와 합의해달라고 매달리는가 하면 피해아동·청소년 가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청소년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공탁서와 함께 공탁금을 보내는 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법부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 ③ 재판과정에서 성매수남의 변호인은 성인 남성들의 성매매 욕구는 본능적이며 저비용, 저위험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 촬영, 유포 협박 피해를 당한 피해아동·청소년을 의도적으로 비하하기 위해 ‘어린 윤락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④ 본센터는 성매수남 측 변호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검찰청과 대법원에 진정하여 유출 과정을 밝혀달라고 하였으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요청하였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성매수남의 변호인을 진정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되었다.

→ 아동·청소년을 직접 목표로 하는 성착취 범죄가 점점 확산되면서 피해아동·청소년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청법’의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은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

(4) 아버지에 의해 조건만남으로 신고된 피해아동·청소년을 담당한 수사관이 위계·위력으로 성폭력/성매수/카메라등이용촬영한 사건

피해아동·청소년 ‘라’(만16세)는 ‘라’의 조건만남 사실을 알게 된 ‘라’의 아버지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었다. ‘라’의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라’가 어렸을 때부터 불우하게 자랐고 아버지와 관계성도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 전학 온 후 왕따를 당하여 자살 시도까지 한 적이 있다는 사실, 경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용돈을 달라는 말을 못하여 조건만남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도를 핑계로 피해아동·청소년을 경찰서 밖으로 불러내어 밥을 사주고 피해아동·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등 하다가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아직도 조건만남 하나? 아저씨한테도 돈 주면 해줄수 있냐?” 하면서 돈을 줄테니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수차례 거부하였지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건으로 조건만남 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이 두려워 하는 수 없이 경찰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이후 1년여간 ‘라’는 경찰관으로부터 성폭력/성매수/카메라등이용촬영을 당하였고, 2016년 0월 경찰관을 본 센터와 함께 고소·고발하였다.

(4)-1. 이 사건의 쟁점

가장 심각한 피해상황에 놓인 성매수 피해아동·청소년을 가끔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피해를 당했다기보다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기 때문에 비난하고 범죄자 취급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겪은 아동·청소년은 부모에게까지 버려졌다고 느끼고 자기혐오와 비난을 내면화하게 된다. 극심한 자살충동을 느끼게 되고 반복적으로 자신을 벌주는 행위로 성매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아동·청소년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보호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성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 ① 경찰관에 의한 수차례 성매수/성폭력/카메라등이용촬영에 이용됐지만 ‘라’는 그 사실을 본 센터에 알리지 않았다. 다른 건으로 지원을 시작한 지 1년이 경과했지만 ‘라’는 경찰관에 의한 피해사실은 털어놓지 않았다. 그것은 경찰관은 신고해봤자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고, 보복의 위험을 심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본 센터는 경찰관을 신고할 수 있다고 설득했지만 ‘라’는 두려움에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하였다. ‘라’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아동·청소년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센터는 경찰관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설득하여 겨우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
- ②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건은 사건 진행이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매개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를 주제로 취재하는 시사프로그램에서 ‘라’의 사례가 보도됨으로써 경찰관이 구속되면서 경찰을 상대로 한 다른 사건에 비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 ③ 법정에서 경찰관은 ‘가출해서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돈만 주면 누구하고도 성관계를 하는 아이들인데 내가 성폭력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구속됐는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청소년들의 특징을 이용하여 공소장에 적시된 날짜에 다른 형사들과 식사를 하였다고 하면서 동료 형사가 법정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5)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몸사진 보내줄 것을 요구받고 사진을 보낸 후 유포협박당함. 이를 계기로 가출로 이어지고 성매매/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건

피해아동·청소년 ‘마’(만16세)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랜덤 채팅을 하다 한 남성A와 대화를 나누었다. A는 대화 도중 ‘마’의 몸매를 보고 싶다며 몸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마’는 거절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A에게 미안한 마음에 몸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다. 사진을 받은 후 A는 사진을 뿌릴 것이라며 한번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는 사진이 유포될 것이 걱정되어 A를 만났고, 그때 성폭력이 있었다. 이후에도 A는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주지시키며 본인과 3개월만 주인-노예 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진 유포의 걱정으로 A를 만나게 된 ‘마’는 짜증을 자주 내고 학교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어머니로부터 크게 야단을 맞았다. A는 ‘마’에게 가출을 할 것을 종용했고, 가출한 ‘마’는 A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당하였으며, 성매매 알선을 강요당했다. 하루에 5-6번씩 성매매를 강요당

하며 완전히 고립된 채 지내던 ‘마’는 성매매 도중 성매수자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A와 성매수자와의 싸움이 커지면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마’는 A와 분리되지 않은 채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A는 ‘나는 성인이니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연인관계이고 생활비를 벌기위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진술할 것을 강요당했다. 경찰서에서 가출신고 된 사실이 드러나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마’는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어 A에게 다시 갈 요량으로 모든 것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마’에게 어머니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에 의해 본 센터에 상담의뢰되었다. 2017년 O월 A를 상대로 강간, 성매매 알선 강요, 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그 전 경찰서에서 ‘마’가 진술한 내용은 A와 분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A의 강요에 의해 거짓진술하였음을 밝히고, 사건을 병합, 재수사 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하고 사건은 2가지로 따로 진행되었다.

(5)-1. 이 사건의 쟁점

온라인 그루밍→ 사진요구→ 유포협박→ 성폭력/성매매알선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성착취 수법으로 인한 피해의 심화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마’의 경우, 결국 A의 강간, 협박은 인정이 안됐고¹³⁾ 성매매알선만 인정이 됐다. 알선이 있다면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당연히 인정¹⁴⁾받아야 하지만 ‘마’의 경우, 알선자가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간주,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처분 받았다.¹⁵⁾

재판이 길어지면서 A에 의해 동일한 피해를 받은 4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마’의 사건과 다른 피해아동·청소년들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A는 법정 구속되었다. 그러나 4명의 피해아동·청소년들은 ‘아청법’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가 적용되어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인정되었는데, ‘마’는 재판 병합 후에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마’의 변호인이 재판부에서 피해자 변호인이라고 발언을 요청하자 재판부에서는 ‘마’는 피해자가 아니라며 ‘마’의 변호사에게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일도 발생했다.

13) 경찰은 사진을 보내는 과정에서 강요는 없었다는 점, 사진을 뿌리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뿌리지 않았고 피해아동·청소년이 지레 겁을 먹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 폭력이나 강금상태없이 자발적으로 ‘마’가 A의 집에 갔다는 점, 이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A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점 등으로 성폭력과 협박은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14)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① 초동수사에서 알선업자 A와 분리시키지 않은채 아동·청소년과 A가 조건사기꾼일 거라고 생각한 수사관의 선입견 문제가 초기 수사방향을 꼬이게 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마’는 경찰서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그동안 계속 A와 함께 있어야 했고, A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마’를 설득, 회유, 강요하여 거짓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마’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마’에게 본인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한 것이 맞냐고 재차 물었을 때, ‘마’가 주저함을 보여줌으로써 경찰이 이상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임에도 무시했다고 하는 점을 보면 경찰이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발적이라는 편견은 일반적이고, 더 나아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수사를 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가출신고를 한 ‘마’의 모친에게도 경찰은 ‘아이가 이상한 취향인거 같다. 아이가 혼자서 다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정신병원부터 데려가 보라’고 했다는 것을 보면 경찰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사건을 그대로 방치해버린 것이다.
- ② 본 센터가 다시 A를 강간, 협박, 성매매알선강요 등으로 고소한 건은 성폭력전담 수사팀에 사건이 배정되었다. 그러나 성폭력전담수사관들의 인식도 다른 경찰관들과 다르지 않았다. 성폭력=강요, 감금, 심각한 폭력이 있음=피해자, 성매매=가시적인 강요, 감금, 심각한 폭력이 있지 않으면 모두 자발적≠피해자 라는 단순도식적 인식과 편견이 오히려 강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많이 본다. 알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훨씬 신빙성을 두고 ‘마’를 6번씩이나 불러 조사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겨우 알선은 인정했지만, ‘마’를 피해자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 ③ 알선자가 있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임에도 보호처분을 받는 등 피해아동·청소년으로서 보호받지 못한 것에 대해 먼저, 초동수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고, 이후 같은 피해를 당한 또다른 아동·청소년 4인이 나타났을 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처분한 부분에 대해 가정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거의 1년 이상이 걸려 직무교육 등 권고를 하겠다는 것과 그 외 진정건은 기각, 각하 처분을 하였다. 가정법원에 대한 항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제15조(알선영업행위등)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청법’의 피해아동·청소년의 범주에서 빠져있다. ‘성매매처벌법’과 ‘아청법’의 명백한 충돌이 있는 지점이지만, 그동안 이 점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드러내 주는 상황이다.

건은 이미 처분이 끝났고, 처분이 결정된 지 6개월이 도과하여 항소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 이 사건은 ‘성매매방지법’과 ‘아청법’ 등 관련법령이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고 있음을 드러냈음과 동시에,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편견으로 인해 피해아동·청소년이 어떻게 처벌을 받게되었는지, 그 외 문제제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사건 진행과정을 통해 알게되면서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 보호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소년사범관련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너무 협소했고, 문제제기 자체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점 등 시사점이 많은 사건이었다.

(6) 동네 언니로부터 성매매 알선 강요를 당하였지만, 그 사실을 소문내 모르는 사람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 등으로 조건만남한다는 사실을 소문내졌으니 돈을 가져오라는 협박을 당했지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호처분 받은 사건

2018년 0월, ‘바’(만14세)는 동네 언니집에 놀러갔다가 언니가 조건만남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싫다는 ‘바’에게 둘이 같이 하자고 하면서 조건을 강요하고,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도 못가게 막았다. 그러던 중 ‘바’의 페이스북이나 핸드폰으로 20만 원을 가져와라, 50만원을 보내라.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너가 조건만남한 사실을 소문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들을 받았다. 이런 메시지는 수시로 지속적으로 보내졌고, 보내는 사람들도 여럿이었다. ‘바’는 성매매를 계속해야 하는 것도 싫었고, 너무 무서워서 학교 선생님께 그 사실을 이야기하여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신고되었다. 본 센터에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연락을 하여 ‘의료지원을 연계하고 싶다, 우리는 여자 산부인과 선생님이 안계신데, ‘바’가 남자선생님한테 진료받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센터에는 의료지원단이 있어 여자 산부인과 선생님이 계시니 ‘바’의 의료 지원을 맡겠다 하여 법률지원은 해바라기에서, 의료지원은 본 센터에서 맡아 지원하였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바’에게 가정법원에서 출두 명령이 떨어졌다. ‘피해자’로 조사받은 줄 알았던 ‘바’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호처분 된 것이다.

(6)-1. 이 사건의 쟁점

‘바’의 사건은 전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알선을 강요 한 가해자(언니)가 있었고, 수사결과 협박을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6명의 아동·청소년이 검거되었기 때문에 ‘바’는 당연히 피해아동·청소년이어야 했지만, 가정법원에서 출두명령서가 왔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해바라기 센터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바’에게 알선당했을 때, 폭력이 있었는가, 감금이 있었는지 물었고, ‘바’는 그런 건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수사관은 자발적이었네요? 라고 물었고, ‘바’는 예. 라고 답하는 부분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바’는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된 대상아동·청소년이 된 것이다. 이에 센터는 가정법원에 어떻게 피해아동·청소년이 성매매 알선을 강요하고, 협박을 가한 가해아동·청소년과 똑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항소하려고 했지만, 피해아동·청소년의 모친이 원하지 않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바’는 본 센터에서 1대1 심리상담을 받고 있었고, ‘바’의 사건은 1년 보호관찰을 받는 것으로 종료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바’는 심리상담사 선생님과 대화 중 집안에서 모친에 의한 학대, 부친에 의한 성추행 등이 보고되었고, 그것은 ‘바’의 극심한 불안증세와 잦은 가출로 이어졌다. ‘바’의 모친은 그 사건이 있는 후 ‘바’를 심하게 통제하고 술을 마시면 흥기를 들고, ‘너죽고 나죽자’고 위협을 하고, 심지어 독극물을 ‘바’가 보는 데서 마셔 112에 실려가기도 하였으며, 부친은 그 사건 이후 ‘바’의 몸을 더듬는 등 ‘바’를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듯 하였다. 부모의 이야기를 차마 할 수 없어 견디다 견디다 가출을 하기도 했지만 불안증이 너무 심하여 ‘바’는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다.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바’의 모친을 만났으나, 모친은 자신의 행동이 학대임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바’는 다시 가출하였고, 가출신고에 의해 수사기관에 발견되었고, ‘바’가 수사기관에 이 사실을 진술하여 수사기관은 학대아동보호기관으로 연계하였다.

- ① ‘바’의 모친은 본 센터에서의 초기 상담시에도 ‘바’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으면 어떡하냐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14살밖에 안되는 앤데 자발적이라는 게 말이되냐? 무조건 피해자다.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하였지만, 결국 ‘바’는 우리 법률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호처분되었다.
- ②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부모들은 성매매에 대한 내면화된 편견(예를들어, ‘유혹하는 여성’, 돈 때문에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하는 더러운 여성 등)과 혐오로 자녀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을 비난하고 끝없이 감시하며 자기도 모르게 혐오로 대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만도 벅찬데, 부모의 달라진 태도를 감당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은 극심한 불안감과 자기혐오, 두려움에 갇히게 된다.

③ 학대아동보호시설에서 ‘바’는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처벌받아야 하는가?’ 고 물었다. 또한 아동학대 부모에게 법원은 상담이수를 명령하였지만 이것도 강제가 아니어서 ‘바’의 부모는 바쁘다는 핑계로 상담을 받지 않았다. 정작 상담을 받아야 할 대상은 ‘바’의 부모였지만 피해아동·청소년만 이동이 제한되는 시설에서 보호라는 명목으로 간혀있게 된 것이다.

→ ‘바’의 사건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는 아동학대 보호시스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대 관련 시설에서도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학대피해 관계자들은 성착취 피해에 대해 무지하여 이런 피해아동·청소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에 관련해서 아동보호기관 종사자들에게 성착취 피해에 대한 교육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바’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바’가 법률로써 명백히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례였다.

나. ‘아청법’ 개정 대응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지속(2015년까지 지속 함)

(2) 2014년도 김해여고생 살해사건 공동대응

- 피고인 3인에 대한 상담의견서 공동제출, 법정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변호인 선임, 사건의 본질을 알리기 위한 언론대응, 캠페인, 기자회견 등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11개기관), 거제가정상담센터,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범숙의집, 경남여성긴급전화1366센터, 경남해바라기아동센터, (사)경남여성회부설성가족상담소, 경남윈스톱지원센터, 고성가족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회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남해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내일을 여는집, 따뜻한 쉼자리, 로렘의 집, 마산YWCA부설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마산가정상담센터,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들레보금자리, 사랑이 샘솟는집, 사천건강가정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생명터, 양산가족상담센터, 양산여성의집, 양산성가족상담소, 우리아이집, 장유하늘가족상담센터,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진해가정상담센터, 진해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창녕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집,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합천가정행복상담센터, 해바라기쉼자리 (43개 기관)

(3) 2014년도 국정감사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참고인 참석: ‘아청법’의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한 질의
2014년 10월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 박숙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운영위원/법률지원단

(4)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문제 토론회 개최

주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대상청소년’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장소: 2015년 3월 23일/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남인순 국회의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사)탁틴내일,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5)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

2015. 3. 26.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성착취 피해 청소년 살해사건 발생

- 발족 기자회견

“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 엄정한 처벌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촉구한다!”

2015년 5월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배경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후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행동 발족함

○ 목적

- 관악 성착취 피해 청소년 사망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재판 모니터링
-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촉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개정 촉구
- 청소년 성착취 예방을 위한 유인행위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및 청소년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담체제와 성착취 피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촉구
- 공동주관단체
(사)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 (사)두루, (사)들꽃청소년세상, (사)탁틴내일(사무국),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재)동천, 반성매매인권행동이름,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상을품은아이들, 수원여성의전화, 십대여성인권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다시함께상담센터
- 참여단체 94개 단체
- 재판모니터링과 의견서 제출
- 국회앞 1인 시위
- 서명운동 전개, 후 남인순 의원실에 전달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2015. 8. 7.

○ 제안이유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 비해 2014년에 총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는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에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함.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따라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

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담소 및 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과는 달리 특화된 발견·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 나.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매매 피해아동·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8조).
 - 다.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 라. 성매매 상담시설 조항을 삭제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고, 성폭력 상담시설은 성폭력 피해자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6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 2015년 발의된 ‘아청법’ 개정안은 제19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7) 십대여성인권센터 토론회 개최

○ 주제: 청소년 성매매문제, 같이 얘기 좀 해봅시다!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교육인가? 처벌인가?

○ 일시/장소: 2015. 10. 19.(월)/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2층 트리스타 대회의실

- 사회: 박숙란 평택지원 국선변호사/십대여성인권센터 운영위원

- 인사말: 장민혜 십대여성인권센터 운영위원장

- 단체소개

- 좌장: 서순성 법무법인(유)원변호사/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장

발제1: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발제2: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김병희 법률사무소소도변호사/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토론1: 문선주 인천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토론2: 오정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토론3: 김학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2팀장

토론4: 조주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여성학박사

토론5: 김 진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외국변호사

토론6: 김란희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푸른꿈터 원장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8) “하은이 사건”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및 항소장 제출¹⁶⁾

○ 주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뿐이다.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가해자를 아동에 대한 침해가 없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일시/장소: 2016. 5. 16.(월) 오전11시/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 기자회견

사회 이영희 대표 (사)탁틴내일

경과 보고 권주리 사무국장 십대여성인권센터

발언1. 정미례 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발언2. 이명화 상임대표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발언3. 배복주 소장 장애여성공감

성명서 낭독 조진경 대표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순실 대표 (사)들꽃청소년세상

향후 계획 조진경 대표 십대여성인권센터

- 항소장 제출

- 공동연대단체 178개

- 시민들에 의한 자생적 인터넷 서명운동 전개

“서울 서부지방법원: 만 13세의 지적장애 여아를 성매수한 가해자에게 불법성이 없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규탄합니다.”

16)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가출하여 다수의 성인 남성들에게 성적인 착취를 당한 만 13세의 지적장애 아동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6명의 가해자를 특정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이 그들의 악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형사재판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016년 현재, 1건은 피고 측이 인정하여 승소하였고, 다른 2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각기 상반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건은 일부승소 판결하여 청구한 배상액의 일부를 인정하였고, 다른 1건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행위를 한 범죄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대상청소년’)이라 하여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패소 판결하였습니다. 지적능력이 7세수준이며, 의제강간의 기준이 되는 연령인 만 13세를 겨우 2개월 지났을 뿐인 아동청소년을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보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2016년 5월 16일 십대여성인권센터 보도자료에서 인용.

http://www.teen-up.com/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24&idx=1031&board_md=view

- 언론대응: 기사: 112건(센터 관련 직접적 기사이며, 관련 기사는 제외), 뉴스: 6건 (EBS뉴스-5/16, 연합뉴스 TV-10/15, SBS뉴스-10/20, 대전MBC-11/2), 방송 2건 (추적 60분 “은밀한 거래, 죽음을 부른 채팅앱”, 그것이 알고 싶다 “위험한 외출 - 13세 소녀와 6인의 남자들)
- “하은이 사건” 이전에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지 않아 사회적인 관심이 적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언론의 관심과 보도를 통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이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구분되는 아청법의 문제점을 이슈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는 현 실태에 대해 많은 유관기관과 정부부처, 일반시민들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이끌어내고 이후 “하은이 사건” 서부지원 항소심 외에 다른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서도 일부 승소를 하였다.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6년 8월 8일(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서 ‘아청법’ 개정안 재발의(제 20대 국회)

(10)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 주제 :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장소 : 2016년 9월 5일(월) 오후2시30분/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 연구단체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 사회 : 정춘숙 의원
- 주제발표 :
 -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김수연(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 패널토론 :
 - 이현숙(탁틴내일 대표)
 - 이해영(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 한명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장)
 - 김성벽(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 전체토론 및 질의

(11)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및 고소·고발장 제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를 고소·고발합니다.”

- 2016년 10월 11일(화) 한국YWCA 연합회(기자회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고발장 제출)
- 총 255개 단체 공동 고소·고발 참여

- 기자회견¹⁷⁾

사회 조진경 대표 십대여성인권센터

고소고발 취지와 경과

김윤지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법률사무소 조인

고소인 발언

공동고발기관 발언1 안수경 위원장 한국YWCA연합회 Y-틴 위원회

공동고발기관 발언2 이영희 대표 (사)탁틴내일

공동고발기관 발언3 정미례 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고소고발장 내용 설현섭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법무법인 송담

이남주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법률사무소 울도

향후 계획 조진경 대표 십대여성인권센터

17)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심지어 성매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구매자에게 살해된 만 14세 아동청소년의 경우도, 2016년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이 6명의 성인 남성에게 성매매에 이용된 사건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입니다. 이렇듯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초기 경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놓였습니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조장, 알선, 유인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상대로 어플리케이션의 행태를 고발하고, 공론화하여 우리 사회에 그 심각성을 알리고, 이러한 현실을 전부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을 2인의 피해아동·청소년과 247개 관련 기관들과 함께 고소 고발하려고 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http://www.teen-up.com/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22&idx=1198&board_md=view

- 고소고발장 제출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 공동대리인: 변호사 강정은, 김병희, 김수연, 김윤지, 박철수, 배수진, 배진수,
 서순성, 설현섭, 이남주, 이영임, 정수경, 최석봉/ 총 13명
- 7개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고소·고발 최종결과 알림
http://www.teen-up.com/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13&idx=3195&board_md=view

(12)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 일시/장소: 2016년 11월 3일 (목) 14시~16시/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
- 토론회
사회: 김성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발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개요/
 정현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상황 실태 /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권개선 정책방안 / 이기연(서울특별시 다시함께센터 소장)
토론:
고의수(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손휘택(경찰청 생활질서계장)
김차연 변호사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종합토론
-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이대젠더법학연구소 공동추진
실태조사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4001&searchselect=boardtitle&searchword=%EC%95%84%EB%8F%99%EC%B2%AD%EC%86%8C%EB%85%84%20%EC%84%B1%EB%A7%A4%EB%A7%A4&pagesize=10&boardtypeid=16&boardid=616234>

(13) 십대여성인권센터 토론회 개최

- 주제: 아동·청소년 성매매문제, 이렇게 해 봅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 (제)개정 토론회
- 일시/장소: 2016년 11월 21일 (월) 14:00~17:00/ 국회 의원회관 9 간담회실
- 공동주최: 십대여성인권센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법무법인 유(원), 사단법인 선
 - 사회: 강정은 변호사
 - 인사말: 장민혜 운영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
 - 좌장: 서순성 변호사
 - 발제 1: 조진경 대표
 - 발제 2: 차민정 변호사, 배수진 변호사
 - 토론 1: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 토론 2: 안성희 검사
 - 토론 3: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과장
 - 토론 4: 한명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 팀장
 - 토론 5: 배진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 토론 6: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4) 십대여성인권센터, UN 아동매매,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한 접수, 2016년 11월 9일 발송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보내는 요청서한 (Letter of Alleg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성매매(성착취)의 인권실태 파악과 사이버 상 청소년 성 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1. 기본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the allegation)

작성자 또는 단체 십대여성인권센터
국적 대한민국

피해자 성 구매자에게 살해된 만 14세 아동
 성인 남성에게 성매매에 이용된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
 기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된 아동

가해자 아동을 성매매로 유인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대한민국

대리자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38길 9-1 은혜빌딩 6층, 대한민국
 10up@daum.net

Letter of Alleg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sex-trafficking and child pornography: On Understanding the Realities of Human Rights in Child Sex-traffick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Crimes in the Cyber Space

Information concerning the allegation

Author or organization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Victims 14-year-old child murdered by a sex purchaser
 13-year-old child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xploited
 in sex-trafficking by an adult male
 Other children introduced to sex trafficking through
 smartphone applications

Assailants The application operators who are introducing children
 to sex-trafficking Republic of Korea

Representative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 (Legal Support Team)
6F Eunhye Bd. 9-1, 38-Gil, Dongsan-ro, You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10up@daum.net

[Reference Material 1] Introduction of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

[Reference Material 2] Materials from the press conference on the accusation and complaint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2017년 2월 13일

○ 제안이유

최근 IT 기술의 발전으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구분하면서도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함. 그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과 동일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성매수자 또는 성매매 알선자 등이 대상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업무의 성격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하여 이들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폐지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

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의미하는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으로 보아 ‘피해아동·청소년’의 개념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제7호).
- 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성을 사기 위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 다.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성을 사기 위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안 제20조제4항제4호 신설).
-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청소년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 참여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8조).
-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 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안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16) 토론회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일시/장소: 2017년 7월 26일(수) 14시~17시30분/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 국회 여성·아동·인권정책포럼
- 공동주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

토론회

좌장: 권인숙 명지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 주제 1.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 주제 2.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주제 3.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토론:

-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변정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팀장
- 여성가족부
- 법무부

(17)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장에게 아청법 개정 권고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 인권위, 성매매 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의견 표명 -
일시: 2017. 8. 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 국회의장에게 ‘성매매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95&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1443>

(18)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 일시/장소: 2017년 9월 26일(화) 14시~17시/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여성가족위원회)·진선미(안전행정위원회)·신용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DSO(디지털 성범죄 아웃), 십대여성인권센터, SNS성범죄박멸팀,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 DSAC
- 후원: 서울특별시

토론회

- 좌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발제:

매체별로 보는 디지털 성폭력 실태·양태 - 전선미 팀장 | DSO

아동·청소년의 사이버 성범죄 노출 실태 및 피해 사례 - 권주리 사무국장 | 십대여성인권센터

디지털 성폭력 처벌 실태와 문제점 - 김현아 변호사 | 법무법인 GL

해외사례를 통한 디지털 성폭력 대안과 IT 기업운영 개선방향 - 하예나 대표 | DSO

토론: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국회특특시민감시단

장동준 아프리카TV 전략본부장

김호범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 협회장

김기문 유레카 대표이사

남화섭 DSAC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 대표

박명진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관리과 인터넷윤리팀장

장우성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장

이남훈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19) 십대여성인권센터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 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일시: 2017. 10. 31.

-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용역

- 연구책임자: 조진경 / 공동연구원: 김진, 김현아, 박혜란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II. 현재 한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현황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현황과 특징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법

3. 현행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처벌의 특징
- Ⅲ.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법제도 현황
1. 조사개요
 2. 국제조약 및 권고
 3. 영국
 4. 미국
 5. 캐나다
 6. 스웨덴
 7. 독일·오스트리아·네덜란드
 8. 일본
- Ⅳ.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입법과제 및 정책제언
1. 성매매에서 성착취로의 입법 및 정책 변화
 2. 대상아동·청소년 조항 삭제
 3.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강력 처벌
 4.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강화와 교육
 5. 아동에 특성화된 보호 시스템 마련
 6. 범죄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전담기구 설치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플리케이션등 규제법)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2017년 11월 23일

○ 제안이유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이 이용했던 성매매 방식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67.0%, 인터넷 카페·채팅이 27.2%를 차지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대부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등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해서는 서비스제공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

케이션 등 온라인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매매 알선 등 정보 발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 발견 시 전송방지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수사기관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와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한 경우 이를 삭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 다.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가 성매매 알선 등 정보 발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 발견 시 전송방지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수사기관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함(안 제17조의2 신설).
- 라.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 이 법안은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21) 성착취 범죄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지원 사례발표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2017년 12월 1일(월) 14:00~17:00/하이서울 유스호스텔 소회의실

- 본 센터에서 1:1 심리상담을 받아 온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사례와 일본의 콜라보 대표를 초청하여 성매수 범죄에 이용되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심리지원 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한 토론회

사회: 조진경 대표(십대여성인권센터)

1. 주제 발표

일본 성매수 범죄에 이용되는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징과 심리 지원 시 유의

할점 - 니토 유메노 대표

(일본 Colabo) / 통역: 양징자(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대표이사)

2. 사례 발표 1

‘아라야, 사랑해’ - 김동심 십대여성인권센터 심리치료사

(예술치료 전문: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3. 사례 발표 2

‘아낌없이 주는 나무’ - 김선영 십대여성인권센터 심리치료사

(기독교동상담 전문: 한국영성치유연구소)

4. 지정 토론 - 신경숙 소장(평화의샘 심리상담센터)

5. 질의 응답 및 종합 토론

(22) 아청법 개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정치행동
(온라인 서명 운동 및 홍보 영상 제작)

① 닷페이스와 십대여성인권센터가 함께 ‘아청법’ 개정 촉구 영상 3편 제작

- 2017. 12. 20. 1탄 발행

#1 “교복 챙겨왔어?”라고 묻는 성매수자들을 만났다

<https://www.dailymotion.com/video/x6qw4d1>

- 2017. 12. 21. 2탄 발행

#2 “네가 어플 깔고 자발적으로 성매매 한 거 아니야?”

https://www.youtube.com/watch?v=fR7_VFVwh7g

- 2018. 1. 19. 3탄 발행

#3 “자기가 성매매해놓고 왜 피해자라는 거야?”

<https://www.youtube.com/watch?v=7H49WjmfWQA>

② 아청법 개정촉구 온라인 정치행동 캠페인

- 일시: 2017.12.19.~2018.01.21.

- 목표인원 10,000을 넘겨 최종인원 12,615명이 서명캠페인에 참여함.

③ 아청법 개정촉구 오프라인 정치행동 I

- 일시/장소: 2018. 2. 8.(목) 14시17시/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십대여성인권센터, 닷페이스, 빠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 주제: “Here I am,우리가 국회에 왔다”

간담회 개최와 온라인 정치 캠페인 전달(온라인 정치행동 경과보고, 서명 결과 발표, 시민 참여자 자유 발언, 여가위/법사위 위원들에게 온라인 정치행동 서명캠페인 참여자 12,615명 메시지 전달)

사회: 조진경 대표(십대여성인권센터)

영상상영 #1 “교복 챙겨왔어?” 라고 묻는 성매수자들을 만났다.

인사와 결의의 말씀

남인순 의원

김삼화 의원

권미혁 의원

정춘숙 의원

이금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서명전달과 사진촬영

아청법 개정을 위한 경과보고(십대여성인권센터)

아청법 개정 촉구 온라인 정치행동 캠페인 서명 결과 발표 및 서명글 대리낭독(닷페이스)

참가자 자유발언

질의응답

서명전달(의원실 방문)

- ④ “Here I am, 우리가 국회에 갔다” 아청법 개정추구를 위한 오프라인 정치행동 II
- 일시: 2018. 2. 13.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정현백 여가부장관,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등기로 서명서 및 탄원서 등 전달

(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¹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통과

18) 남인순 의원, 김삼희 의원, 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박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대상아동·청소년 개념 및 소년법 적용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미성년자 간음·추행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을 규정하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018년2월21일(수), 제356회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에서.

- 2018년 2월 21일(수), 제356회 국회(임시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2018년 2월 28일(수)에 있을 제356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률 검토 요구¹⁹⁾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따라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

19) 2018년 2월 28일(수)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8년 2월 23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전문위원 강병훈의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다. “의사일정 제7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성매매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이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는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반하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보다 중함에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에 반하여 개정안에서는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상 타당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양 범죄 사이의 행위 불법성과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 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에 대한 종합적 심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김진태 위원은 의사일정 제7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원용해서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라고 하였고, 위원장 권성동은 여가부 정현백 장관에게, “장관님, 전문위원이 아주 지적을 여러 가지를 해 놓고 소위 말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 중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살아 있음에도 그것보다 경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형평에 안 맞는다 이런 취지인데 별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은 “선진 외국에서는 성 착취로 규정해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에서도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한 바 있어서 저희는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조속히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제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라고 하였다. 위원장 권성동은 “법이라는 것은 체계가 맞아야 되고 또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한번 2소위에 넘겨서, 아마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였다. 2018년2월28일(수), 제356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에서 인용.

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담소 및 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과는 달리 특화된 발견·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 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 다.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안 제20조제3항제1호).
-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여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8조).
- 마.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 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안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24) 국제세미나 개최

- 제목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화 모색 국제세미나
- 일시/장소 : 2018년 8월 28(화) 13:00-18:00/국회 도서관 대강당
- 공동주최 : 십대여성인권센터,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변호사회,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사단법인 두루,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한국YWCA연합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엑팍코리아(탁틴내일)

시간	내용
13:00-13:30	등록
	사회 : 이만우 팀장(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13:30-14:00	<p>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희상 국회의장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p>인사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춘숙 공동대표 의원(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 김삼화 공동대표 의원(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 권미혁 공동대표 의원(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 남인순 의원(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이내영 처장(국회입법조사처) · 송병국 원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엘 이보네 대사대리(주한유럽연합대표부) · 조현욱 회장(한국여성변호사회) · 김지형 이사장(사단법인 두루) · 한영수 회장(한국YWCA연합회) · 최영희 이사장(ECPAT Korea 탁틴내일) · 서순성 단장(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좌장 : 강지원 변호사(現 푸르메 이사장/ 前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위원장)
14:00-16:10	<p>Session 1: 국가별 보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럽연합(Dr. Joëlle HIVONNET -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대리) 2. 스웨덴(Per-Anders Sunesson - 스웨덴 외교부 반인신매매대사 / ECPAT International Moderator) 3. 영국(Sarah Champion - 노동당 국회의원) 4. 한국(조진경, Cho Jin Kyeong -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시간	내용
16:10-16:20	쉬는 시간
16:20-17:30	Session 2: 토론 1. 김현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2. 김지연 선임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4. 안수경 위원장(한국YWCA연합회 Y-틴위원회) 5. 이현숙 대표(ECPAT Korea 탁틴내일) 6. 조주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7. 이금순 과장(여성가족부) 8. 신희영 검사(법무부)
17:30-18:00	질의응답(플로어 포함 전체 토론)

(25) ‘성착취 당한 한 10대 여고생의 일기’ 영상제작과 배포

- 십대여성인권센터 x 씨리얼 제작
- <https://www.youtube.com/watch?v=3HmcwhAMmAo&t=2s>

(26)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오늘’ 展, 전시회 개최

- 전시기간: 2018년 11월 28일(수) ~ 12월 9일(일)
 -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ECC B3 대산갤러리
 - 주 최: 십대여성인권센터
 - 후 원: 아산나눔재단, 이화여자대학교 교목실 다락방전도협회
- 〈오프닝 초대〉
- 11.28(수) 오후 2시
이화여자대학교 ECC B3 대산갤러리
- 〈토크 콘서트〉
- 11.28(수) 오후 4시
이화여자대학교 ECC B4 ECC극장
- 〈가이드와 함께하는 관람〉
- 11.29(목)~12.8(토) 오후 2시
이화여자대학교 ECC B3 대산갤러리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성구매 대상청소년이 아니라 성착취 피해청소년이다. 국회는 아청법개정 더 이상 미루지 마라!!!
- 2018년 12월 4일(화) 오전11시, 국회 정문
- 주최 : 다시함께상담센터, 탁틴내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 십대여성인권센터,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전국 위기청소년교육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기자회견
사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배무진활동가
발언
 1. 다시함께상담센터 김민영센터장
 2. 십대여성인권센터 김혜진활동가
 3.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이윤서활동가
 4. 박숙란변호사
 5. 탁틴내일 이현숙대표공동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 기자회견 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원실 방문
- 12월 5일(수)부터 국회 앞 1인 시위

3. 2019년도 - 2020년도

- 2019년은 국제적인 영향을 크게 받은 해이다. 대표적인 예로, 먼저 2019년 4월부터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받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들은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시작했다.²⁰⁾ 이런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매개하여 이윤을 벌어들이던 채팅 어

20) 발제자는 2019년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만나 어떤 이유로 성인인증절차를 도입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은 ‘아청법’이 있어서 국내법이 우선인 상황이라 국내법의 연령에 맞춰야 했는데, 2019년에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상 연령을 조정하는 시기여서 이번에 구글이 선제적으로 연령조정하면서 성인인증절차까지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글 본사에서는 한

플 운영자들이 구글 플랫폼에서 국내 3사(SK, KT, LG)가 운영하는 ‘원스토어’ 플랫폼으로 대거 이동하였다. 그러나 2019년 8월 원스토어 역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성매매 등)로 알선·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데 이용되는 채팅앱/소개팅앱에 대해 청소년 ‘이용불가등급’으로 연령등급 정책을 변경함²¹⁾으로써 그동안 성착취를 알선·유인하는 데 사용되었던 스마트폰 채팅 어플들에게 있어서 변화는 필수 불가결해졌다.²²⁾ 두 번째로는 2019년 10월 16일 발표된 세계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공유 다크웹 사이트 ‘Welcome to Video’ 운영자인 손정우와 한국인 이용자 223명이 미국, 영국 등 해외 32개국과 공조 수사하여 검거되었다는 발표이다. 이 발표는 한국 사회 전체를 크게 흔들어 놓았다. 그동안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성범죄자 특정도 어렵고 증거채취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성범죄자는 결국 검거할 수 없고 피해를 안당하려면 본인들이 더 조심해야 한다는 공포와 체념의 상태가 주도적이었는데, 손정우 등의 검거를 보고 ‘할 수 있었는데, 안한거였구나’라는 국민적 정서가 분노로 변화한 지점이 있고, 여기에 더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최악의 그리고 최대의 성착취물이 거래되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어린 한국 남성이라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망신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데 전 국민이 공감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2018년 검거된 손정우가 1심에서 겨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데 반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했다는 혐의만으로도 길게는 22년의 형을 선고받은 미국의 사례가 언론에 의해 소개되면서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얼마나 성착취 범죄에 허용적이고,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안전하지 않은 사회였는지에 대한 전 국민적 각성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각성은 전 국민적 분노에 불을 붙이는 격이었다. 추적단 ‘불꽃’의 과감한 범죄추적도 한 몫을 크게 했다. 꼼꼼하게 채취한 증거물을 가지고 자신감을 되찾은 경찰과 언론의 적극적 개입으로 결국 조주빈 일당이 검거되었고,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수법과 끔찍한 피해 정황이 적나라하게 온 세상에 드러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숨가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2020년이 시작되었다.

국이 스마트폰 어플때문에 그렇게 문제인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거냐고 물었다한다. 원스토어 관계자와의 대화에서도 “기업은 이유를 추구하는 게 목적인데 법이 없는데, 먼저 나서는 건 어려워요. 잘못했다가 고소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법 제정을 안하는거예요?” 라고 발제자에게 물었다. 발제자 역시, “그러게요.” 라고 했다.

21)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원스토어 사측과의 협력의 결과였다.

22) 원스토어 측은 2019년 7월 18일 공지사항에 채팅/소개팅 상품에 대해 연령등급 정책변경을 고지하였고 이러한 원스토어의 정책변경 고지 방식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특정고시 결정에도 영향을 주었다. 아래는 원스토어 공지사항에 게시된 고지화면이다.



- 2020년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해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국민적 관심사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범죄자인 조주빈 등에 맞춰졌다.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뒷집만 지고 있던 정부나 국회는 뭐라도 해야했다.²³⁾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조주빈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청원이 500만명 이상 서명을 하는 상황이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앞다투어 대책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였다.²⁴⁾ 그 과정에서 성매수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의 자발성을 문제삼아 절대로 피해자로 볼 수 없다하여 ‘대상아동·청소년’ 삭제에 반대해왔던 법무부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더 이상 반대를 지속할 명분이 없었다.²⁵⁾ 21대 총선이 모두 끝나고 20대

23) 발제자는 이 시점에서 정치권과 정부에 의자를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만들어 줄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한다.

24) 본 발제문 주 3), 4) 참조

25) ‘아청법’ 개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던 법무부의 입장선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컸다. 2020년 4월 9일 ‘성착취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가 TFT’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면담에서 추장관은 의제강간연령상향과 대상아동·청소년 삭제에 대해 모두 동의했고, 법무부가 법개정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법무부, 성착취 탈출 걸림돌 ‘대상 아동·청소년 입건’ 폐지 추진”, 2020.04.10. 문재연 기자, 헤

국회가 종료를 앞둔 2020년 4월 29일, 하루만에 법사위 제2소위 개회를 통해 안건 상정되어 제2소위를 통과,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후 통과, 국회 본회의에 상정, 4월 30일 자정이 지나 대상아동·청소년 삭제의 ‘아청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아청법’이 개정된 것이다.

- 한편,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 2017년도부터 사진/영상 유포·협박·제작강요 등의 피해아동·청소년들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면서 그 수가 해마다 점점 늘어났다. 문자, 부호 중심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음성, 영상, 보이스트록까지 융합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 인터넷방송, 온라인 사이트, 메신저, 오픈채팅, 채팅 기능이 있는 온라인 게임, 심지어 당근마켓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디지털 매체들에서 온라인그루밍→사진/영상 요청→받으면 사진/영상 유포협박을 통해 더욱 심한 성착취 사진/영상 제작 강요→사진/영상 공유, 판매→성폭력/성매매에 이르는 디지털 성착취(성매매 등) 범죄가 도식화되었다. 이 과정 중간에 도움을 요청하는 아동·청소년은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²⁶⁾ 사진/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성폭력/성매매를 당할 상황에서 우리 센터를 찾아오는 피해아동·청소년들에게 연계할 기관은 없는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이 주요 목적 사업인 상황에서 ‘성매매’ 당하고 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거의 모든 성착취 범죄가 디지털 매체를 매개로 하고 있었고, 시작은 모두 그루밍 형태를 띄고 있었다. 성폭력과 성매매는 애초부터 구별할 수도, 구별할 필요도 없었다. 비록 성매매 피해를 입고 도움을 요청한 것은 아니었지만, 도식화된 범죄의 진행과정 중간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론은 현실세계에서의 성폭력/성매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유포/협박, 제작강요, 성폭력/성매매를 모두 포괄하여 디지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고 지원하였다. 2019년에는 거의 모든 디지털 매체에서

월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410000185>

이에 대해 본 센터에서도 2020. 4. 16. “이제 총선은 끝났다. 20대 국회는 ‘아청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 소임을 다하라”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논평하였다. “늦었지만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인권보호가 법무부의 본래 임무를 재천명하고 성착취를 엄단하겠다는 추이에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의 수장이 성평등 인권의식을 가진 여성이라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http://www.teen-up.com/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6&idx=3413&board_md=view

- 26) 물론 온라인 그루밍, 유포협박, 제작 강요 등의 각각의 피해 중 하나라도 겪어야 했다면 피해아동·청소년과 그들 가족의 고통은 모두 상상을 초월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는 우리 센터의 경험상 모든 과정을 모두 겪고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이 좋은 편이라는 의미이다.

성착취 영상 판매를 대놓고 하고 있었고, 아무리 캡처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하여도 신고자가 피해자 본인이 아니다, 실물이 있는 것도 아니다 등등의 이유로 각하시키기만 했다. 그래서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구입하여 신고하기로 결정하였다.

2020년 벽두부터 코로나19의 공포가 우리 사회 전체를 휩쓸었다. 아동·청소년을 만나러 가셔도 안되고, 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었다.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에 더욱 매달려 있을 것인데 더욱 위험해 지는 상황임에 틀림없을 것임에도 만날수가 없었다. 아청법이 더욱 빨리 개정되어야한다. 그런 상황에서 n번방으로 전국민이 들끓었다. 물들어올 때 노저이라는 말처럼 n번방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연관성,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가장 심각한 착취 형태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4월 29일, ‘아청법’ 개정안이 하루만에 3번의 법사위 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상상으로만 있었던 하루만의 법통과가 현실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끌면서 그렇게나 많은 피해아동·청소년을 양산시켰나. 하는 마음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통과된 것이 기적같기만 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은 바로 사문화될 위험이 있다. 그러니 법 시행 초기에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가 제대로 되어야 했다. 먼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법 개정 이전에도 15명의 상담원들이 사이버포래상담 - 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S·N·S -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통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피해아동·청소년에게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사이버포래상담사업은 사이버상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고, 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S·N·S에 연계하면 상담소에서는 대면상담을 통해 필요한 법률·의료·심리·부모교육을 직접지원하면서 주거·학업·일자리 등은 기존 시스템에 연계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서울위기 청소년교육센터를 통해 성매매 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캠프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2020년 연초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공격과 장기화 그리고 한국사회를 뒤흔든 갖가지 사회적·정치적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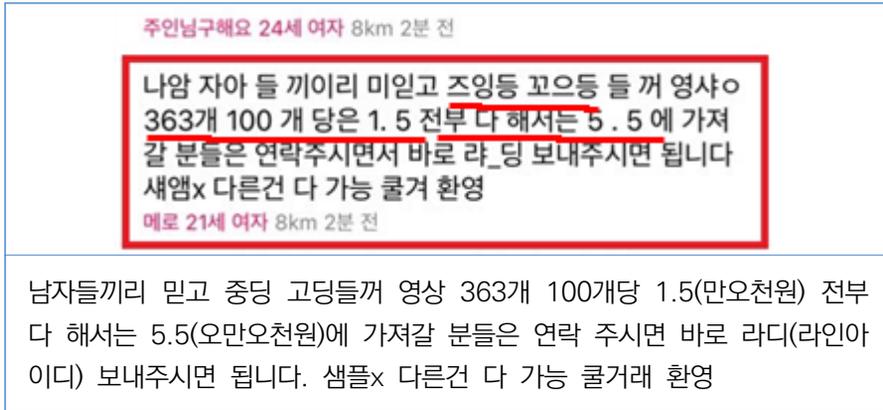
슈들의 광풍은 우리 사회 전체를 두려움과 혼란속에 몰아넣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적정한 규모로 법시행 초기에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다면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아청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예산확보의 벽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전국 시도에 17개소 설치, 지원센터별 각 3명의 상담원이 일하는 구조로 결정되었다. 사실상 개정된 ‘아청법’에 규정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는 거의 할 수 없는 구조였다. 3명의 상담원이 상담소, 교육센터, 자활센터, 사이버포래상담사업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구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일 뿐이다. 법 개정만 된다면 최소한 법대로 집행이 될거라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수탁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시작하자는 것이 결론이었다. 그렇게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그나마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관은 이곳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이 삭제되면서 이 개념을 근거로 운영돼 왔던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폐지되었다. 그나마 성매매 재피해 예방 교육과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제공되었던 다양한 프로그램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법은 개정되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 주요사건

(1) 채팅 어플에서 발견한 아동·청소년성착취영상판매 성범죄자 고발

2019년 0월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포래상담사업팀에서 그림과 같은 영상판매 문구를 발견하고 손님을 가장하여 구매하여, 60여개의 영상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경찰에 고발하였다.²⁷⁾

27) 영상판매 광고는 그 자체로 중고등학생들의 영상이라고 한 점으로 363개 모두를 고발하였지만, 경찰에서는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어야만 가해자를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하여 신체 발육상태가 너무 어려보이거나 교복을 입었다든지 정황상 아동·청소년일 수 밖에 없는 영상 60여개를 추려서 고발한 것이다. 담당 수사관은 처음에는 한 장 한 장 보면서 아동·청소년인 이유를 기재해야 한 다면서 이런 걸 고발하는가 하는 느낌을 주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으며, 고발 취지에 동의가 되자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듯 보였다.



(1)-1. 이 사건의 쟁점

성착취 영상 구입을 계좌이체로 했기 때문에 가해자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그 외 가해자에 대해 아무것도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장 계좌는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가해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놀랍게도 실명 통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경찰이 수사를 착수하자 곧 체포할 수 있었다. 가해자의 집 컴퓨터에는 수많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이 있었다.

- ① 일반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매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은 통장 계좌를 실명으로 그대로 사용한 것을 볼 때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그저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아동정도로 보는 시각의 문제이다.
- ② 그동안 이러한 문구를 수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거의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왔었는데, 방심위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면 그 자료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방심위에서는 심의하고 사이트폐쇄나 삭제, 이용자 이용금지 정도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도 계속 문제라고 생각한다.
- ③ 가해자는 2020년 0월, 1심 재판에서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 때, 실형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사법부가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려 노력하였다고 생각되지만, 재판부는 현행 법률에 의해 선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형

량을 선고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매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인이 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아버지가 교육과 선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자·판매한 음란물 중 사춘기 이전의 아동이 나오는 것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춘기 이전의 아동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는 사법부의 시각은 여전히 문제적이었다. 사춘기 이전의 아동이 나왔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볼 요인일 뿐이다.

- ④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유통, 판매한 성범죄자가 겨우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성착취 영상물을 내려받고, 구입, 소지한 성범죄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도 ‘음란물 소지’ 혐의로 사건 접수 되었음을 알리는 통지가 총 4건 송달되었으며, 그 중 2건은 육군 보통검찰부에서 접수된 사항을 알리는 통지였고, 나머지 2건은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통지였다.

→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조항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개정되기 전 ‘아청법’의 적용을 받았다. 법이 개정 된 이후에도 위의 문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다.

(2) n번방 성착취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2020년 ‘사’(만 17세)는 ‘일탈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진을 올릴 때마다 환호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재미있었다. 많은 쪽지가 왔고, 그 중에서 괜찮은 프로필을 보고 한 남성B와 대화를 나눴다.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사’와 B는 현실세계에서 만나 성관계 하는 사이가 되었다. B는 ‘사’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B는 “사”에게 변태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폭력과 비하하는 용어를 썼으며 몰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사’는 B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같지 않다고 느꼈지만 첫 성관계를 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사’는 B와 헤어졌고, B는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그때부터 ‘사’는 ‘일탈계’를 운영하는 사람을 신고하겠다고면서 협박하는 메시지를 받았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부모님께 알려줬다면서 부모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내라고 했다. ‘사’는 부모님께 알려질 것이 두려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며 매달렸다. 그러자 그들은 반성문을 쓰고 크게 읽는 영상을 보내라, 성기에 이물질을 넣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대변을 보는 장면을 확대해서 보내라는 등 그들이 잘못을 용서할 때까지 자신들의 요구대로 해야한다고 강요했

다. ‘사’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도 부모님께 알려질 것이 두려워 그들의 요구대로 했다. 결국 뭔가를 눈치챈 부모님에 의해 신고가 되었다. 부모님은 직접 경찰에 신고 하여 조사하기 전에 1366에 상담을 요청했고, 1366에서 본센터를 알려줬다.

(2)-1. 이 사건의 쟁점

‘사’의 사건은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지원하는 곳이 없어서 1366에서는 우리 센터 연락처를 ‘사’의 부모님께 알려주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영상 삭제를 위주로 하는 곳이어서 직접 상담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 센터에서는 어떤 사건인지 만나서 들어보기 위해 부모님께 내방을 요청했는데, 당일 ‘사’의 부모님이 경찰 수사를 약속하고 온 상황이라 경찰서 조사 동행을 하게 되었다. 지방의 여·청 수사대에서 조사를 하는 중에 수사관들은 왜 ‘일탈계’를 했느냐. 너도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다 들리는 회의실에서 들으라는 듯이 큰소리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사건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사’는 부모님께 너무 미안했고, 본인이 왜 신고를 했는지 후회가 되어 울기만 했다. ‘사’는 B에 대해 말할 수 없었고 B와 헤어지자마자 생긴 n번방 성착취 사건과 같은 일이 더 이상 본인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신고하고 싶었으나, 모두들 ‘사’의 책임과 잘못을 지적하기만 했다.

- ① 이 사건은 결국 우리 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사’의 사건은 조주빈 등이 검거된 이후 발생했지만 경찰의 조치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피해자로 보지 않았고, 일탈계를 운영한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이 그런 짓을 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하는 시각에서 피해아동·청소년만을 탓하는 분위기였다.
- ② 본 센터에서는 경찰청에 지방의 여청계에 대해 문제제기하였고, 지방청 여청수사대로 사건이 이관되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같은 가해자들에게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십여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 ③ ‘사’는 처음에는 B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B와 헤어진 이후에 n번방 성착취 사건과 같은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가해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는 B가 고의적으로 ‘사’의 개인정보를 넘겨줬다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B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 ④ 우리 센터에서는 가해자들을 특정하기 위해 B를 신고하기로 하였다. 만약 B가 의심하는 것처럼 개인정보를 넘겨줬다면 B의 핸드폰 등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결과는 가해자들과 B와는 관계가 없었다. 십여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통해 3-4명의 가해자들이 붙잡혔지만, 그들은 모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주범의 협박에 의해 한 일이라며,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 ‘아청법’이 개정된 이후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상담소는 어디인가? ‘사’는 B를 아동복지법, 아청법, 상해, 정통방법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렇다면 ‘사’의 지원은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여야 할까?

나. ‘아청법’ 개정 대응

(1)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제안서 발송

- 2018년 12월 4일 아청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후 주최 단체들은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개별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아청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희망은 점점 멀어져갔다.
- 2019년 1월 11일에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 준비위원회에서 참여제안서를 발송하였고, 1. 14. ‘아청법’ 개정 공대위 설명회를 시작으로 1. 22.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발목잡는 법무부, 외면하는 법사위! 더 이상은 못참겠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치 말고, 아청법을 즉각 개정하라!!
- 2019년 1월 22(화) 오전11시, 국회 정문
- 주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총 364개
- 기자회견
기자회견 배경 및 취지 설명
공대위발족 경과보고

참여단체 연대발언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대표단: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탁틴내일
-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 십대여성인권센터
- 홍보TFT: 다시함께상담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인권센터 살림,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4) 아청법 개정 공대위 활동 일지(2019-2020)²⁸⁾

〈2019년〉

1.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 2소위 위원장 김도읍 의원실 면담
1. 14. ‘아청법’ 개정 공대위 설명회
1. 16.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1. 22. 공대위 발족(364개 단체) 및 국회 앞 기자회견, 김도읍 의원 면담 요청
1. 25-27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약 1,500명)
1. 25. 김도읍 의원실 공대위와 면담 거절 회신 받음
1. 28.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및 ‘아청법’ 개정 촉구 서명 전달 / 김삼화 의원실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2. 11.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
2. 15. 여가부 ‘아청법’ 개정 회의
2. 18~19. 법무부 ‘아청법’ 개정 공대위 의견서 전달에 대한 민원 회신

28)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 자료는 ‘아청법’ 개정 공대위 사무국이었던 십대여성인권센터 홈페이지
(www.teen-up.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25.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
3. 5. ‘아청법’ 개정 공대위 영상 제작 “아청법 개정 7년의 싸움, 무엇 때문일까?” <https://www.youtube.com/watch?v=PjleOkIME0c>
3. 8. 여가부 차관, 권익증진 국장, 장관 보좌관, 아청과 과장 면담/
3.8 여성대회 ‘아청법’ 개정 공대위 부스 운영
3. 18.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
3. 25. ‘아청법’ 개정 공대위 김도읍 의원실 및 국회 법사위 의원실 방문
3. 26. 국회 법사위 제 2소위 개최 - 안전상정 안됨
3. 27.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 및 자한당 정책위의장 면담 요청 공문
3. 28. 법무부 담당자 면담 요청
3. 29. 국회 법사위 제 2소위 참관 요청 공문 발송
4. 3. 국회 법사위 제 2소위 개최 - 안전상정 안 됨, 참관 못함.
4. 9.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
4. 17-23 ‘아청법’ 개정 공대위 법무부 항의 행동 돌입: 팩스 및 전화 총공, 공대위 랜딩페이지 오픈(4/17 오픈, 5/13 기준 조회수 5,101건)
4. 23.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 ‘아청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공동주최 참여 요청 공문 발송(법사위 18명)
6. 4. ‘아청법’ 개정 국회간담회 개최 (남인순, 김삼화, 백혜련, 표창원 의원실 공동주최) 및 국회간담회 후 논평 보도자료 작성·배포(6/10)
6. 10. 국가인권위원회 간담회 요청 공문 발송
7. 17.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
8. 22.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
8. 27. 남인순 의원실 면담
9. 9. ‘아청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발표
9. 17.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 및 청와대 정책비서관 면담
9. 18-19. UN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 정부심의 모니터링(UN아동권리위원회 권고)
10. 1. ‘아청법’ 개정 공대위: 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법률전문가 릴레이 성명 시작(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협회)
10. 2. ‘아청법’ 개정 공대위: 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법률전문가 릴레이 성명 2차(사단법인 두루)
10. 4. ‘아청법’ 개정 공대위: 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법률전문가 릴레이 성명 3차(국제아동인권센터)

10. 7. ‘아청법’ 개정 공대위: 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법률전문가 릴레이 성명 4차(장애인권법센터)
10. 8. ‘아청법’ 개정 공대위: 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법률전문가 릴레이 성명 5차(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10. 10. ‘아청법’ 개정 공대위: 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법률전문가 릴레이 성명 6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0. 11. ‘아청법’ 개정 공대위: 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법률전문가 릴레이 성명 7차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평등)
10. 14. 백혜련 의원실 통해 ‘아청법’ 관련 법무부 국감질의서 제출
10. 14. ‘아청법’ 개정 공대위: 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법률전문가 릴레이 성명 8차 (탁틴내일 ECPAT KOREA)
10. 15. ‘아청법’ 개정 공대위: 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법률전문가 릴레이 성명 9차 (공익법센터 어필)
10. 16. ‘아청법’ 개정 공대위: 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법률전문가 릴레이 성명 10차 (한국젠더법학회)
10. 17. ‘아청법’ 개정 공대위: 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법률전문가 릴레이 성명 11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10. 18. ‘아청법’ 개정 공대위: 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법률전문가 릴레이 성명 12차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10. 21. ‘아청법’ 개정 공대위: 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법률전문가 릴레이 성명 13차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10. 22. ‘아청법’ 개정 공대위: 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법률전문가 릴레이 성명 14차 (세이브더칠드런)
10. 23. ‘아청법’ 개정 공대위: 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법률전문가 릴레이 성명 15차 (한국YMCA전국연맹)
10. 24. 최종성명 발표(십대여성인권센터)
11. 25. EU한국대표부 주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세미나”에서 EU한국대표부 이름의 “아청법” 개정 촉구 서한 작성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기로 결정
12. 30.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 백혜련 의원실 통해 서면 질의서 제출

〈2020년〉

- 02. 18.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
- 03. 23. 21대 총선 각 당별 정책제안서 공문 발송(47개 정당 중, 36개 정당에 정책제안서 발송)
- 03. 27.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
- 04. 03. 국회 국민동의청원 돌입 및 ‘아청법’ 개정 촉구 공대위 성명 발표
- 04. 06. 21대 총선 각 당별 정책제안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 공약 유무, 보도자료 배포
- 04. 07. 국회 국민동의청원 홍보 및 참여 독려 메일 발송
- 04. 09. 법무부 장관 면담
- 04. 16. 법무부 입장 선회 관련 십대여성인권센터 논평 보도자료 배포
- 04. 17.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
법무부 입장 선회 관련 한국여성변호사회 성명 발표
세이브더칠드런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캠페인 시작
- 04. 21. 굿네이버스 베이비뉴스에 컬럼 기고,
세이브더칠드런 법무부 입장 선회 관련 논평 발표
- 04. 2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내일신문에 컬럼 기고
세이브더칠드런 카카오톡플러스 친구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요청 메시지 발송
- 04. 23.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아청법’ 개정 통과 촉구 성명 발표
- 04. 2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자 대상 국회 국민동의청원 독려 문자 발송
- 04. 27. 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김아중 씨 성착취 반대 광고 영상 송출 시작
국회법사위 제 2소위(4/29) 방청 신청 공문 발송
- 04. 29. 국회 법사위 의원실 방문 및 국회 대응(법사위 제2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 회의)
- 04. 30. ‘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개정안 통과 환영 논평 보도자료 배포
- 05. 03. 국회 국민동의청원 종료(14,217명 청원)
- 05. 11. ‘아청법’ 개정 공대위 회의 - 공대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키로 하고, 법 시행 이후 사안 발생 시 공동 대응키로 하다.

- 2021. 11. 30 현재, 378개 단체 참여.

(5) 십대여성인권센터 × 씨리얼, 한국일보, 세계일보, 여성가족부 영상제작

2020 죽어도 안 바뀌는 법을 먹고 자란 N번방

https://www.youtube.com/watch?v=H_UCGo-pwWE

2020 “신고해봐, 너도 처벌 받아” 성착취 피해자들이 신고 못하는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ik2Bp8bZgag>

2020 [디지털 성범죄 대처법] 만약 내가 사진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면?

<https://www.youtube.com/watch?v=67XckwE6YnE>

2020 랜덤채팅앱이 위험한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qxzptNvx2y4>

2020 디지털성범죄 OUT | 가해자 처벌 강화 | 신상공개 확대 등 | 텔레그램 N번방

<https://www.youtube.com/watch?v=7bMTU8ziSbY>

(6) 2020년 11월 20일 개정 ‘아청법’ 시행 홍보 : 십대여성인권센터 홍보 책자 제작 및 배포 등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북: “저도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 서울시교육청, 경찰청 등 10,000부 배포

Ⅲ. 2021년 ‘대상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 개정 ‘아청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한 해에도 제/개정되는 법률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그 법들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지는 못한다. 어떤 법들은 개정이 되었지만 무엇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아는 사람들이 없어, 개정되자마자 사문화 수준이 돼 버리는 법률도 부지기수로 많다. 발제자는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이 삭제되어 성매매 된 아동·청소년을 모두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 법률이 시행되고 난 후, 1년을 지켜보면서 이 법률이 그렇게 된 듯 하다. 개정된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법률이다. 피해아동·청소년과 그의 가족들도 자신이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아청법’은

개정되었지만 경·검 수사기관²⁹⁾도, 사법기관도, 학교 선생님들도, 아동·청소년 보호기관들도, 심지어 성범죄자들도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모른다. 물론 이들 중에는 법 개정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을 지켜봤을 때, 개정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법을 집행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십대여성인권센터가 고소·고발한 ** 경찰서 수사관은 법이 개정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³⁰⁾ 그러나 집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성매매 방지법’ 제정 과정에서도 수사기관들이 수사는 안하고 업주를 불러 소위 ‘윤락녀’에게 받아냈던 ‘차용증’을 찢게 함으로써 사건을 시작조차 하지 않고 마무리되었던 경우가 왕왕 있었다. 명분은 ‘윤락녀’가 업주를 고소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준다는 것이었다(도와준다는 의미). 겉으로 보기에 업주도, 수사관들도, 성매매 당사자들도 힘들이지 않고 모든 것이 잘 정리된 것처럼 보였다.³¹⁾ 그러나 수사기관의 이러한 행태는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 공권력의 남용임과 동시에 직무유기일 뿐이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수사기관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차피 성매매하는 애들은 수사하고 나서도 다시 성매매할거야. 그런 애들이 무슨 피해자야. 그러니 돈 때문에 업주를 고소하려고 한다면 돈을 받아주거나 업주에게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게 해주면 서로 잘 마무리 될테니 그러면 서로 고생할 필요도 없고...’ 이런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왔고,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했는데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안될 뿐일 것이리라. 그래서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더욱 고소·고발을 한 것이다. ‘아청법’이 시행되는 초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제기하지 않는다면, 수사관들의 이런 행태는 전국적으로 관행이 돼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문제제기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했기 때문이다. 법집행의 최일선에 경찰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늘 매를 맞아도 경찰부터 맞는 현실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혹자는 발제자에게 “이제 고만 좀 하세요. 법 바꿨으면 됐지, 집행까지 신경써야하나요?”라고 묻는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법이 바뀌었으면 법대로 저절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법개정 사실을 알리고, 법개

29) 2021년 3월 십대여성인권센터 상담원이 지원했던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의 사건으로 OO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와 통화하는 중, 담당검사는 본 사건 성매매건에 대해 피해아동·청소년을 가정법원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에 상담원이 법이 바뀌었는데 가정법원으로 보내냐고 물었다. 통화 종료 후 다시 검사에게 연락이 왔고, 담당검사는 말을 바꾸어 공소권없음 처분할 거라고 하였다. 관련 법을 찾아보니 개정된 내용이 있었고, 본인이 검사이기는 하지만 모든 법에 대해 바로바로 알 수는 없다고 하였다.

30) 발제1의 사례1

31) 이렇게 사건이 무마되는 듯 하였지만 결국 업주는 수년이 흐르고 피해여성이 다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차용증을 가지고 또다시 협박하였다.(찢었던 차용증 외에 복사본이나 원본을 가지고 있었다.)

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득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원체계를 적정하고 실효성있게 계획하여 제대로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법이 문자적으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성인식에 기반한 일상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그전에 해왔던 생각과 습관, 관행으로 되돌아가 버릴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개정된 법률은 사문화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1년동안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아청법’ 시행 1년 평가의 내용이다.

개정된 ‘아청법’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아예 삭제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지칭할 때 “성착취”로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개정 ‘아청법’ 제2조(정의) 규정에서 볼 때, 6 “피해아동·청소년”과 6의2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 구별하고 있다. 피해아동·청소년 규정에 이미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규정이 모두 포함돼 있음에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은 불필요한 강조이다. 법 개정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 따로 구분해놓지 않으면 현장에서 매번 경험했듯이 성매매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 규정에서 원래 빠져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강조할 필요가 있음에 동의가 되었다. 그러나 성매매라는 용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호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행위로 본다는 의미에서 동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용어 자체에 자발성이 내포돼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성폭력범죄와 성매매는 용어 자체로 차별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³²⁾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 성매수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 신체적, 정신적, 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모두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월한 성인과 대등하게 보이게 하는 이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 사회의 의식이 성숙해져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32) 이런 이유 때문에 성폭력 전담 수사관들이 훨씬 성매매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자발성과 그에 기초한 책임성에 초점을 맞춘다. 성폭력 전담 수사관들이 성폭력=강제=피해자, 성매매=자발≠피해자라는 신념이 강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심대여성인권센터에서 지원한 ‘하은이’ 사건의 경우, ‘하은이’가 여러 성인 남성들에게 대가(숙박, 식사, 떡볶이 등)를 받았다고 하여 성폭력이 아니라며,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결국 ‘하은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우리센터 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하은이’ 사건이 알려지고 전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을 때, 모두는 ‘하은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하은이’와 같이 성폭행과 성매매가 잘 구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뒤섞여있는 대상의 경우, 성매매지원단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지만, 하은이가 피해자가 되면 다시 성폭력피해자로만 부르고 싶어한다. 이 사건이 공론화 된 이후에 ‘하은이’에 대한 법적지원은 심대여성인권센터에서 했는데, 예산이나 법적 지원은 성폭력 상담소로 향했다. “성매매 용어는 그 자체로 낙인일 뿐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돈으로 유인하여 성착취하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진다면 성매매라는 용어는 삭제하고 성착취 용어로 바뀌어야 한다. ‘아청법’ 개정의 다음 걸음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으로 대치하는 것이다.

이제 2021년 ‘아청법’ 시행 1년의 현실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1. 피해아동·청소년 현황 : 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S·N·S, 피해아동·청소년 연령별 비교

2019년도

실인원 (명)	13세 이하	14세 ~16세	17세 ~19세	20세 ~29세	30세 ~39세	40세 ~49세	미파악	비고
76	1	24	30	13	2	4	2	30~40세 2명, 4명은 내담자 모

2020년도

실인원 (명)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대	30대	미파악
94	0	1	1	8	12	11	18	16	13	4	8	0	2

2021년도 상반기

실인원 (명)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대	30대	미파악
58	0	2	4	2	3	5	6	11	8	8	6	0	3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법시행 전후 상담통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상담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개정 ‘아청법’이 시행되면서 지금의 상담통계로는 상담이 늘었다, 줄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2021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도와 비교할 수도 없어 2019년도 상담통계와 2020년, 그리고 2021년 상반기 상담통계를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13세 이하 저연령층의 증가이다. 2019년에는 13세 이하가 1명이었다. 그러나 2020년에는 11세 1명, 12세 1명, 2021년 상반기 통계만을 봐도 11세가 2명, 12세가 4명에 달했다. 확실히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에 비해 초등학교 4-5학년 나이인 저연령층이 수적으로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미등교와 장시간의 인터넷 사용 때문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이들 모두는 부모에 의해 연락이 온 것이고, 대부분 자위 사진/영상 요구와 섹스팅, 만남 요구, 유포 협박 등의 문제들이었고, 실제로 현실세계에서 가해자들을 만나 성추행, 성폭력이 있었던 사례도 있다. 특이한 점은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상담의뢰한 13세 이하의 아동·청소년들이 동일한 어플을 사용했고, 거기서 그루밍 상대를 만나 라인이나 카톡, 페이스북 등 SNS로 이동하여 범행에 이용됐다는 점인데, 그 동일한 인터넷 매체는 채팅기능이 있는 온라인 게임이었다.

2. 2021년 디지털 환경의 변화

2020년 들어 디지털 성착취의 매개가 되는 매체는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게임, 중고물품 거래, 유튜브 등 개인방송)에서 성착취(성매매 등)로의 유인이 난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3세 이하의 피해아동·청소년이 공유한 게임 어플은 아래와 같다.

가. 게임(카*라*더)

피해아동·청소년들은 학교도 안가고 심심하던 상황에서 화면 캐릭터가 귀엽고 펜션한 것이 마음에 들어 자주 들어와 아래 게임(카*라*더)을 했다. 월드라는 게시판과 귓속말이라는 1:1 채팅이 가능하고 보이스 채팅 기능도 있다. 이 게임을 하면서 모두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노출되었다.



나. 게임 내 아바타를 이용한 성착취 정황 모니터링(테*즈*너)

팜(농장): 아바타가 꾸미는 농장으로 인기가 많은 계정은 다른 아바타가 방문하여 소통하는 장소로 이용됨.

(1) 팜 제목: 셋방, 술집, 클럽



(2) 팜제목: 야납/야한마사지/셋

- 야납 뜻: 야한 납치방이라고 하여 아바타를 쫓아가서 납치 상황극을 함.
- 야마: 야한 마사지의 줄임말.



다. 메타버스 앱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 발전은 더욱 촉진됐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인터넷 매체를 덜 사용해 왔던 40세 이후 세대들마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2021년은 전 세대가 디지털 세계에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타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극복하고 대면하지 않으면서 소통이 가능한 최적화된 매체로 2021년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다.

(1) 제*토

① 가입과 성인 인증 절차

- 전체이용가 어플리케이션(앱스토어, 구글 스토어)임.
- 앱을 설치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만 누르면 캐릭터 생성 후 앱을 이용할 수 있음.(카카오톡, 구글 등으로 로그인하여 이용이 가능함.)
- 사용자 임의대로 프로필(닉네임, 성별, 나이, 캐릭터 외모, 한 줄 소개) 설정.

② 아동·청소년의 이용 빈도

- 10대 여성의 이용률이 높음.
- 다운로드 수 5000만명 이상 임.
- 최소나이 만 7세 청소년까지 발견함.

③ 가출, 성착취 징후

- 제페토 내부에 피드라는 기능을 통해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데 피드를 이용해 비공개로 자신의 신체 사진을 올리고 있음.(팔로우를 하면 아무 제제 없이 사진을 볼 수 있음.)
- 검색창에 브너, 몸사, 변.을 검색하면 몸사진을 교환하거나 제페토에 존재하는 짤메(제페토 메신저)를 통해 사진교환이나 짤섹(제페토 캐릭터를 이용한 성행위, 제페토 메신저를 이용한 성적 대화) 등을 제안하는 계정 있음.
- 제페토 프로필 사진에 자신의 신체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음.

④ 어플 특성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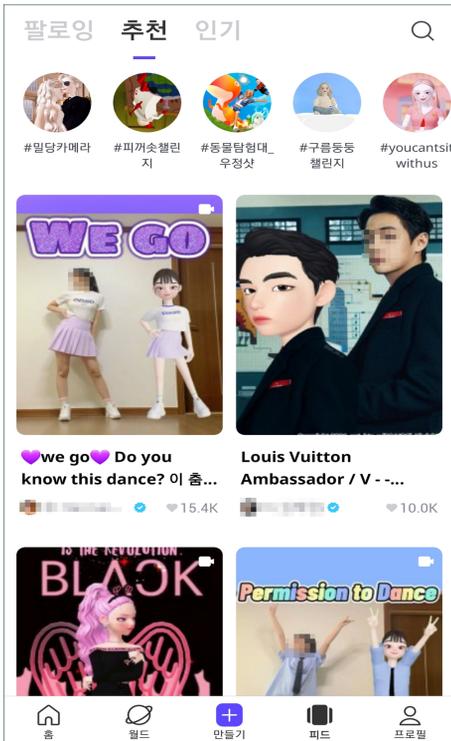
- 전체적으로 틱톡과 거의 흡사하며, 팔로잉, 좋아요, 1:1 메시지, 선물 기능이 있음.
- 검색 화면에는 인기, 사용자, 동영상, 사운드, 해시태그 창들이 존재함.
- 어플내에 ‘월드’에 접속하여 다른 캐릭터들과 공개 대화를 하거나 팔로우를 걸거

나 1:1대화를 할 수 있음. 학교, 공원, 한강공원 등 다양한 월드가 존재하는데 ‘학교’ 월드에서 특히 상황극을 하는 유저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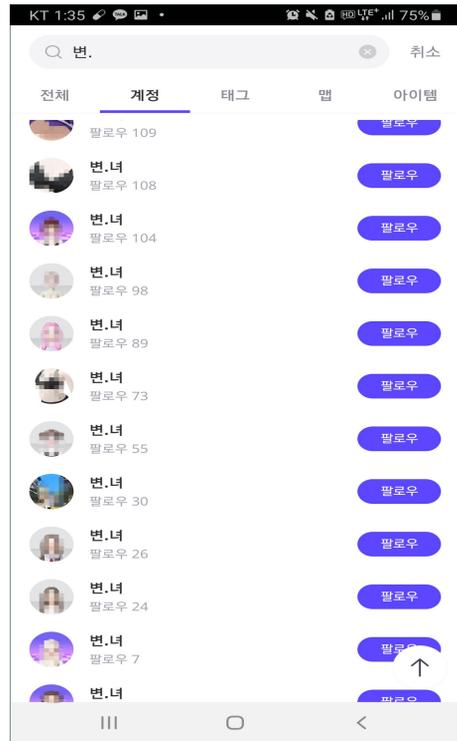
- ‘홈’에서 캐릭터를 꾸밀 수 있으며, ‘만들기’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함.
- 메시지를 보낼 때 포인트 소모 전혀 없음.
- 상대방의 프로필을 통해 사진, 아이디, 좋아요 수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내가 팔로잉 한사람을 따로 볼 수 있음.
- 화면을 캡처 할 수 있음.(대화내용, 프로필, 영상 모두 가능), 내부신고 기능 존재 함.
- 메인 캐릭터 외에도 서브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음.
- 비공개 계정도 메시지 전송이 가능함.



[사진 1] 월드 내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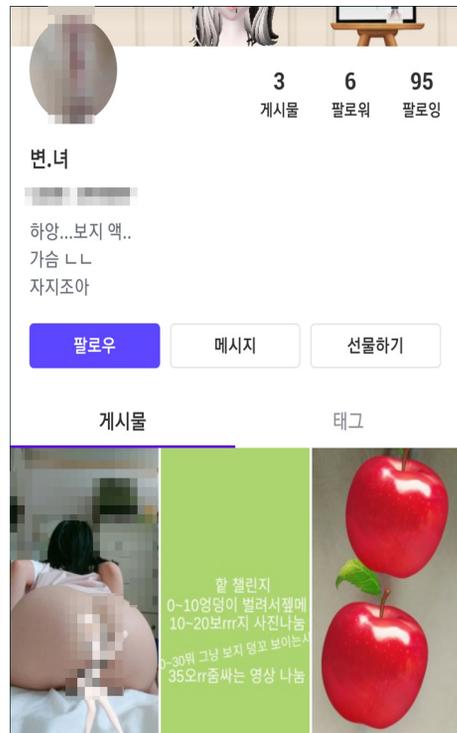
[사진 2] 피드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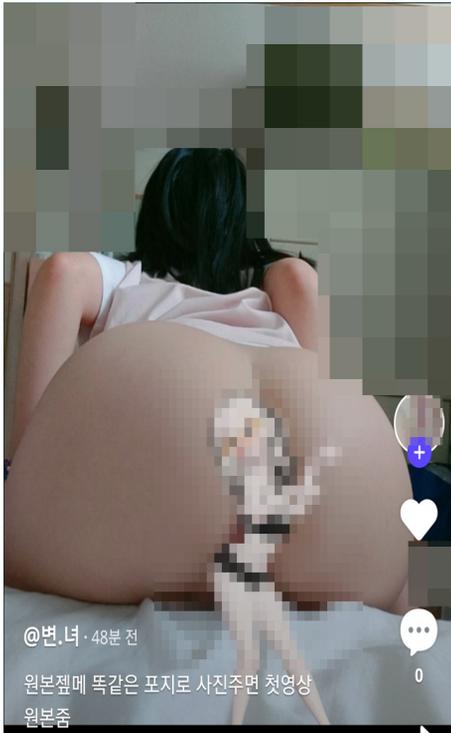
[사진 3] 검색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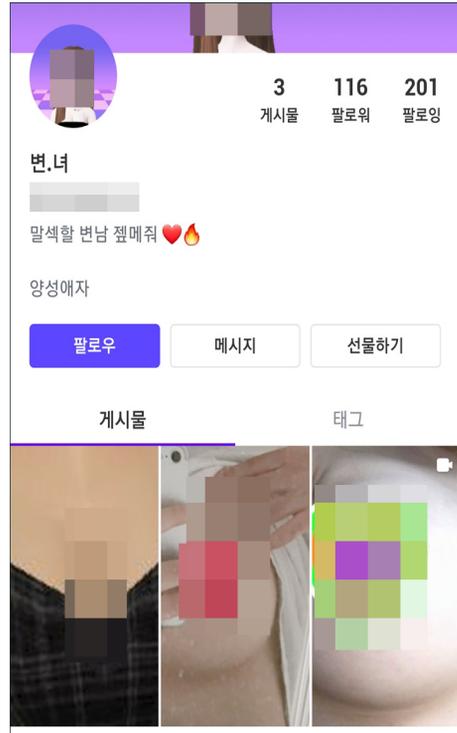
[사진 4] 성착취 정황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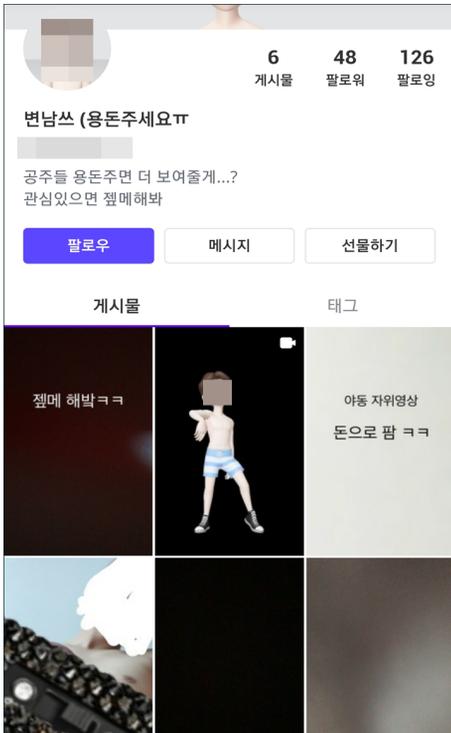
[사진 5] 성착취 정황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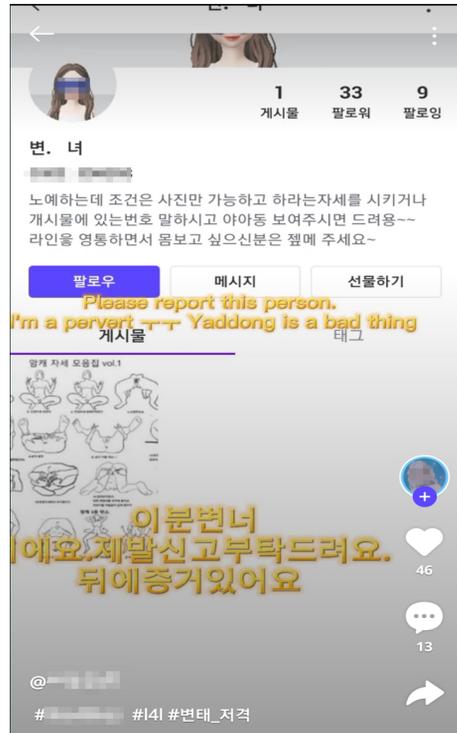
[사진 6] 성착취 정황 ③



[사진 7] 성착취 정황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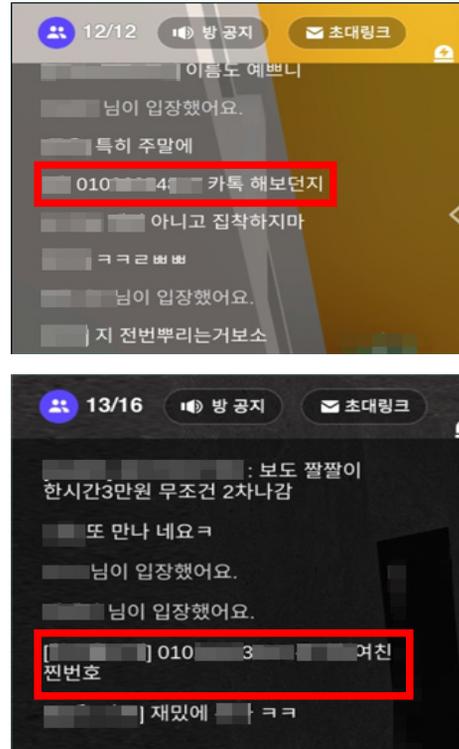
[사진 8] 성착취 정황 ⑤



[사진 9] 성착취 정황 ⑥



[사진 10] 성착취 정황 ⑦



[사진 11] 성착취 정황 ⑧

3. 채팅 기능이 있는 게임, 아바타를 통한 게임, 메타버스 형태의 디지털 성착취를 매개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예방할 것인가?

2020년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사이버포래상담사업’의 모니터링과 신고사업에 대해 기능의 축소를 요청받았다. 그 이유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과 중복된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활동해왔고 그동안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새롭게 생기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모니터링과 신고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이버포래상담사업’은 오직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고 전국의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기능만 하라는 최근 여가부의 요청을 받으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코로나19가 10년을 앞당긴 디지털세상은 더욱 확장되고, 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임이 불보듯이 변하며, 발생하는 더욱 저연령화된 피해자/가해자의 지원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며, 신고가

되어야 피해도 가해도 멈출 수 있는데, 그 기능을 모두 지금 설치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게만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모니터링과 신고는 더욱 많은 곳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일임에도 디지털성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성매매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각각 다르므로, 예산이 중복적으로 집행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에 새롭게 생기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중복사업으로 오인되고 있는 ‘사이버포래상담사업’의 사업내용 조정은 필요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지만, ‘사이버포래상담사업’에서 모니터링과 신고사업을 중단하여 피해자 발견과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이유로 앞으로 한국사회에는 n번방과 같은 큰 사건들이 또 반복될 수 있으며 대응능력을 갖춘 기관이 아무데도 없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디지털 성범죄를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로만 정의를 한정시킨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래는 발제자가 쓴 글로,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계간지 「젠더리뷰」 2020 가을호 Vol. 58호에 실린 글이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다양한 성적 범죄행위를 일컫는데, 필자는 현재 한국사회가 이 범죄의 범위에 대해 매우 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명확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³³⁾ 네이버 지식백과³⁴⁾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불법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유포(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소비(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 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 등이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디지털 그루밍³⁵⁾도 디지털 성범죄

33) <https://d4u.stop.or.kr/>

3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2468&cid=43667&categoryId=43667>

35) 이는 온라인 채팅·모바일 메신저·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에 해당된다고 정리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를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보다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듯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한 대표적 기관이나 공개적인 차원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디지털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 범죄로 한정시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지원 경험을 통해 볼 때,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상에 국한되지 않고 결국 오프라인 세계 즉, 현실세계로 확장되어 실제적인 성폭력, 성매매 행위로까지 발현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는데,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를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한정시킨다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현실세계로까지 확장되어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이나 성범죄자 처벌에 있어 분절적인 시각으로 피해자나 가해자를 바라보게 되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 정리된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를 현실세계에 확장되어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 행위까지 포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필자는 시작하면서 말했듯이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다양한 성적 범죄행위를 지칭한다고 정의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로만 한정시키는 시각은 경찰청의 직제에도 그대로 노정되고 있다고 본다.

경찰은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로 체계를 2분화하면서 수사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에서 맡고 있다.³⁶⁾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는 여성폭력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생활안전국에서 단속위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 십대여성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건³⁷⁾인 0000 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수사팀 역시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성매매피

성 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를 뜻한다. 디지털 그루밍 가해자들은 우선 피해자를 물색하고 접근하여 대화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얼굴 사진과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오프라인 만남 성적 촬영물 등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후 함께 나눴던 대화 내용과 전송했던 파일 등의 유포를 빌미로 자신의 말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협박을 가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 촬영물을 얻어내거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디지털 성범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2468&cid=43667&categoryId=43667>

36) 사실 현재 가장 조직적 변화가 큰 곳은 경찰이라고 본다. 검경 수사권조정과정에서 권력의 집중을 막고 지역분권적 생활밀착형 경찰조직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직형태라고 보는데, 시행 초기이므로 사실 현장에서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조차도 판단이 안된다. 경찰은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선경찰들과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37) 발제1의 사례2

해아동·청소년을 ‘아청법’이 바뀌었음에도 피해자 조사하지 않고 피의자 조사해버린 기가막힌 인권침해가 벌어졌다. 성매매 업소 단속을 나간 수사관들이 법이 개정되어 성매매된 모든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보호·지원되어야 할 피해자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앞으로도 생활안전국에서 성매매업소 단속을 나갔는데, 그곳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통해 성매매에 유인된 아동·청소년이 발견된다면 그 피해아동·청소년은 어디서 어떻게 조사받고 보호받아야 하는가? 만약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로 이용된 아동·청소년이 발견된다면 그 경우 국가수사본부의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생활안전국에서 단속 중 발견된 아동·청소년은 국가수사본부로 보내지는 것인가?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현장에서는 답답한 마음뿐이다. 그렇다면 국가수사본부의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와 사이버수사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수사의 경우는 어떠한가? 사이버수사국은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만을 처리하는 곳인가? 그렇다면 디지털 상에서 그루밍, 사진유포협박, 성매매/성폭력으로 이어지는 범죄는 어디서 수사하는가?

4. 사이버수사국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포래상담사업팀은 사이버수사국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 여러 차례 수사의뢰하였다.

[표] 사이버수사국 신고 현황

번호	트위터	텔레그램	라인	카톡	내용
1	e3l6tz o□j3				"트위터에서 타인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하여 프로필을 작성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게시, 유포, 영리목적으로 판매함"
7	Kt□p2	qw○01	qw△ 140		트위터, 텔레그램, 라인에서 불법 촬영 영상물을 게시 및 영리목적으로 판매함. 텔레그램 방접속 시 불법촬영 유출본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음.

번호	트위터	텔레그램	라인	카톡	내용
11	alalr□	no○un			트위터, 텔레그램에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프로필을 작성하였으며, 불법 촬영 영상물을 게시, 유포, 소지, 판매하는 텔레그램 방의 입장권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함. 텔레그램 N번방 입장료 받고 팔던 사람임.
20	□qlq1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중이며, 트위터에서 홍보와 사이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게시, 유포, 영리목적으로 판매함. 문의는 트위터 디엠이나 라인으로 보내 달라고 함.
33	yjWc □mG □7W			06△a	“06 알몸 사진, 동영상. 가지고 있는 모든 사진 영상대충(160장) 5천원” 트위터, 카톡에서 불법 촬영 영상물을 게시 및 영리목적으로 판매함.
46	gh0□ 8928	q○17			트위터, 텔레그램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글을 작성함. 중고딩 영상 팜/샘플 인증 가능!/ 이벤트 기간만 가능함!!
53				오픈 채팅	1번째 □ 젖은 전복방 2번째 마르□ 샘플 3번째 □ 영상저장소 5번째 리미□디션 7번째 비발□계 중 봄 1약장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운영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 소지, 유통하며 불법 토도, 사행성 도박 등에 가입 행위를 조장함. 현재까지 7번 방을 옮겼으며, 개인정보가 필수적인 사행성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음 방의 주소를 주지 않겠다고 함.

이런 내용으로 2020년 총 79건, 2021년 현재까지 26건을 서울청여청범죄수사국과 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국(ECRM)에 신고하였다. 사이버상 모니터링 중 영상판매 등의 경우는 거의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하고 있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직접 지원할 때는 대부분 여청범죄수사국에 의뢰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할 경우, 디지털 성매매 범죄의 경우는 자신들의 업무라고 보지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많고, 여청범죄 수사국은 사이버 범죄를 처리하는데 관점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아래는 사이버포래상담팀의 상담원이 사이버수사국에 보낸 메일이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9/27일에 저희 기관에서 사이버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의심 정보를 모니터링 하던 중, 페이스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판매·전시 및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는 '19금'이라는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1) 피해 아동·청소년의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 2) 영상이름이나 폴더 이름에 아동·청소년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어가 확인되었다는 점, 3) 거래 후기 역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4) 그룹 가입자가 6.1천명에 달하며 현재 공개그룹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른 이용자들도 절차없이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제재가 시급하다고 생각되었으며, 모든 정황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어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한 후,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에 같은 날 즉시 신고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28일, 해당 건을 배당받은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와 받아보니 해당 건은 정황만 있을 뿐 아동·청소년임이 명확하지 않고, 페이스북 그룹이 성착취의 매개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칭하는 명칭인) '노예'라는 말 역시 성착취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저희 기관이 실제로 영상을 구매하여 첨부한 것이 아니면 수사가 어렵다고 하였으며 ECRM 상으로는 증거 화면 역시 흑백으로 작게 보여 확인이 어려우니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라고 하시며 해당 건은 반려하겠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관에서는 해당 그룹에서 아무런 절차 없이 모든 이용자가 열람 가능한 상태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판매·전시 및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법적 제재가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그룹은 10/19인 현재까지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심지어 가입자가 6.5천명으로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해당 신고 건에 대한 증거자료, 신고리스트를 첨부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 메일을 보고 사이버수사국에서는 센터로 전화를 해서 이런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사실 직제분리가 적합하게 되지 않아 여러 가지로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느낌에 의논을 하고 싶은 건 오히려 십대여성인권센터이다.

또한 ‘위장수사’의 경우, 2021년 1월 21일자로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 권유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며, 특히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기회제공형 합정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2021년 1월 26일자로 “경찰의 미성년 대상 성매매 단속 ‘합정수사’ 전면도입 검토를 열렬히 환영하며, 검토로 그치지 말고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합정수사’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2021년 경찰은 ‘기회제공형 합정수사’ 즉, 아동·청소년처럼 위장하여 성매매를 유인, 권유하는 성매수자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발표였으나 시행된 바 없다. 공염불로 끝나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오히려 그동안 관행처럼 해오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회제공형 합정수사를 하다가 ‘아청법’이 바뀌어 적용할 법률이 없자, 아동·청소년을 온라인에서 성매매 광고를 했다고 기소를 하는 웃기지도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나³⁸⁾ 이에 대해 경찰청은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사이버수사국 ECRM으로 신고했을 때 일선경찰들이 센터를 상대로 항의하고 위협하는 듯한 사례들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고 있다.³⁹⁾

아 래

1) 트위터: 판매합니다(@Unread0584_)

- 7/9에 ECRM에 신고 진행.
- 7/10 서울**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김** 수사관 사건 배당.

38) 발제1의 사례3

39) 이 자료는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자문단회의에서 제출한 자료임

진행 날짜	관할 경찰서	내용
7/15	서울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해당 정보는 아동청소년임이 명확하지 않는데 왜 채증을 해서 보내지 않았냐며 영상 채증도 없이 이거 의심되니까 다 수사하라는 식으로 던져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큰소리침. 앞으로는 채증을 해서 보내고, 해당 건은 채증자료가 없어 수사를 진행하기 힘들니 반려하겠다고 함.
7/21	서울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ECRM 시스템 내에 수사착수로 변경되어 있어 확인차 연락함. 이에 ECRM에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반려를 하거나 정식접수를 하든지 등록을 해야 하는데, 반려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을 통해 반려 심사를 거쳐야한다고 함. 이에 반려예정인지 물어보니, 반려는 할 것이라고 하여 통화 종료함.
9/6	서울 **경찰서	현재 수사 착수 중으로 되어있음.

2) 트위터: Du**un(@flow**3947)

- 8/6 ECRM에 신고 진행.
- 통상 신고 후 1일~2일 이내에 배당이 되는 편인데 13일째 배당이 되지 않음.
- 8/18 ECRM으로부터 ‘귀하의 민원이 임시 접수 상태로 계속 대기 중이니 평일 중에 서울 ***경찰서 혹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문자 수신.
- 8/19 서울 ***경찰서에 문의.

진행 날짜	관할 경찰서	내용
8/19	서울 *** 경찰서	신고 건이 관할서/수사관 배당이 되지 않고 임시접수 상태에서 ***경찰서에 방문하라는 문자가 옴. 이에 대해 ***경찰서 정** 경사와 통화하여 확인 요청을 하자 보통 ecrm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면 본청(서울청)에 접수된 후 분청(지방청)으로 배당이 되는데 이 건은 본청에서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라고 통지를 받았으며 직접 방문하라고 함. 이에 1) 다른 건들은 모두 방문접수 없이 접수가 되는데 이 건만 방문접수

진행 날짜	관할 경찰서	내용
		<p>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사유, 2) 배당이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문의를 ‘***경찰서’에 하라고 특정한 것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묻자</p> <p>1)의 경우 본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 본인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2)의 경우 ip기준인 것 같으나 확실하지 않고, 본 기관에서 가까운 곳으로 배정된 것 같다는 답변을 받음.</p> <p>이어, 신고가 접수된 후 배당이 되지 않은 상태(임시접수)로 2주가 지나면 <u>종결(반려/취하) 처리가 되기에 종결된 후에 다시 신고를 진행한 후 본 기관 대표 혹은 대표 위임장을 받은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u> 답변을 받음.</p>
8/23	-	종결(반려/취하) 됨.
8/25	-	ECRM시스템에 재 신고 진행.
8/26	서*특별시 경찰청	서*특별시 경찰청으로 관할서 배당
9/1	서*특별시 경찰청	서*특별시 경찰청 *** 수사관 앞으로 배당됨.

3) 앱: F**ch**X

- 7/27 ECRM에 신고 진행.

진행 날짜	관할 경찰서	내용
8/31	서울 ***경찰서	<p>- 2021년 8/31 서울**경찰서 한** 경위와 통화함.</p> <p>- 7/27에 신고 진행했던 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위하여 앱 자체를 신고 진행한 것인지 물음. 이에 해당 앱이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의 여성 아동·청소년의 신체사진을 아카이빙하여 성착취 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 앱 유통을 막거나 접속차단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p>

진행 날짜	관할 경찰서	내용
		<p><u>하다고 생각되어 신고했다고 함.</u> 그러자 해당 앱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도 있기 때문에 앱 자체를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운영자에게 관리의 책임을 묻고 이용자들의 정보를 받아 이용자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수사 결과 앱 본사가 홍콩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운영자 특정도 되지 않는다고 함. 이에 수사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팀에 전화를 해보자, 신고를 진행하면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으며 본 센터가 직접 방심위에 신고해보길 권유함. 본 센터에서 이미 7/27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신고 진행했으나 방심위 특성상 언제 처리가 될지 몰라 그때까지 앱 내 성착취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음을 설명함. 그러자,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방심위 측에 협조를 구할테니 방심위에 다시 신고를 하고 본인들에게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u>더 이상 수사진행이 불가하니 진정취소를 해야 한다고 함.</u> 이어, 방심위에 빠른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7/27 방심위 신고접수번호를 말해달라고 하여 우선적으로 전달함.</p>
9/2	서울 **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취소와 관련하여 통화 진행함. - 본 건은 형사사건으로 그 사람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신 건데 Fe**ch**X의 경우 다른 SNS와 마찬가지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음란 정보를 게시한 이용자들의 문제라고 함. 운영자가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자의 관리의 문제의 책임을 묻게 하려면 운영자가 특정 되서 운영정책위반, 관리규정, 앱 진상확인, 이용자 정보수집여부 확인 등이 진술이 되어야 하지만 특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술된 내용이 없어 진정 취하장을 써달라고 했다고 함. 또한 이용자 범죄 사실에 있어 본 게시글은 다 트위터에 올려진 게시글인데 트위터 자체를 신고하지 않지 않냐며 원게시글을 각각 수사의뢰 해야 한다고 함. - 근거지를보고 IP추적을 해본 결과 본사가 홍콩으로 뜨지만 이것또한 정확한 것이 아니며 미국 클라우드페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클라우드페어는 정보를 아예 주지 않아 수사관 본인이 할 수 있는건 다했다고 함. - 방심위에 확인해주시기로 했던 건에 대해 물어보니, 청소년보호팀과 연락해봤는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방심위는 IP와 URL기반으로 차단하고 있는데 F**ch**X는 앱이기 때문에 URL이 특정되지 않아 차단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함.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내

진행 날짜	관할 경찰서	내용
		<p>려지게 해서 유통자체를 막아야하는데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보호문제로 인해 그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중결하기 위해 진술을 받아야 하는데 진술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형식적인 절차로 진정취하장을 제출해달라고 함.</u> - <u>이에 수사가 어려운점에 대해 알겠으나 피해 사실이 있는 앱에 대해서 진정취하장을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함.</u> 또한,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 내부종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취하장을 제출해달라는 것인지 물어보니, 이러한 신고 건이 40~50건 정도가 있는데 본인도 빨리 처리해야 해서 취하장을 제출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어려운 게 아니고 형식적인 것이라고 함. 이에 수사가 어려운 것은 알겠으나 피해 정황이 분명인 것에 대해 취하장을 작성할 수 없으니 내부종결로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안내드림. - 이에 그럼 서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알겠다고 한 후 추후 다시 연락주기로 함.
9/6	서울 **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경찰서로부터 진정취소는 제출할 수 없는지 다시 물어보아 그렇다고 하니, 그럼 경찰서로 오라고 하여 알겠다고 함.</u> 이에 오늘 바로 출석해달라고 하여 바로는 어려울 것 같고 일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니 내일이라도 오라고 함. 대표님께서 상중이셔서 위임장이나 필요서류를 챙겨가기에는 이번주중은 어려울 것 같고 일정 논의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하니 위임장도 가지고 있는게 없냐며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서 오늘 올 수 없냐고 함.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 자신이 오늘 당직이라 늦게 까지 있으니 늦게라도 오라고 하여 이번주는 안되고 일정 논의하고 다시 연락드려야할 것 같다고 하니 이번주 금요일까지는 언제 가능한지 전화해달라고 한 후 통화 종료함.

5.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요청한다

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하여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현재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형태로는 법에 규정된 지원센터의 업무, 즉 사이버상에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

고 법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과 성매매재피해예방교육, 부모교육, 주거, 학업, 일자리 지원과 사전사후지원까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 국회, 여성가족부 등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은 노력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반드시 관찰 시켜야 한다. 또한 지원센터는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온라인그룹→사진요구, 유포 협박→더 심각한 영상을 찍도록 강요→웹하드, SNS 등을 통해 공유, 판매 등→사진, 영상을 근거로 성폭행/성매매 알선 강요 등의 일련의 단계를 모두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당하고 와서 도움 받아라 할 것인지, 아니면, 복합적 피해 중에 성매매만 떼어서 지원할 것인지, 디지털 매체를 통해 발생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지원해야 하는 현실은 매우 중첩적이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 또한 현재 매우 희소하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존재해왔던 여성·아동에 대한 피해지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아직까지 전통적 성범죄와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 지원과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 지원은 둘 다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나 둘의 영역이 전혀 다른 차원이 있다는 점에서 따로, 분리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여가부의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청의 직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가부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여가부도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듯 하다. 특히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인 ‘아청법’의 주무부처는 아동·청소년성보호과이지만,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체계는 권익기반과가 담당하고 있다. ‘아청법’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는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운영을 법률의 주무부처가 담당하고 있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수시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적으로 보완하고 현장과 법률 주무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은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홍보와 교육 : 인식의 변화와 법개정의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아청법’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개정 ‘아청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홍보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 및 법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1년동안 시행을 해왔는지 알고 싶다. 법이 바뀌었지만,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때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는가?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피해아동·청소년의 연령은 끔찍할 정도로 저연령화되고 있다. 선언만 있는 대책과 문자로만 존재하는 법률은 이런 상황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복잡해질 것이며, 수많은 어린 피해자들만 양산해 낼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도 되기 쉽지만, 저연령인 아동·청소년들이 가해자가 되기도 쉽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되는 것도 극복하기 어렵지만, 어린 가해자들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용서받고 극복해내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만들어 내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더없이 시급하다. 그렇다면 ‘아청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은 어디서 누가 해야 할 일인가? 여가부는 이에 대해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고 있는것인가?

다. 국제연대의 중요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법제화, 정부의 책임이 중요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지대하여 전지구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엄청난 진화를 이끌어냈고 그 기술의 적용과 사용을 10년 이상 앞당겼다고 본다. 이에 디지털 거대 플랫폼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너무나 중요해졌다. 디지털 기술은 국경과 지역의 한계가 전혀 없어 2018-2019년 손정우 사건과 같이 세계적 연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최근 우리 국회에서도 디지털 기술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 거의 모든 범죄들이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발생할 것임이 틀림없다. 이번 2020년 6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기업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점 등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위험한 환경은 그대로 둔 채 아동·청소년에게만 조심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대책은 전혀 의미가 없다.

라. 아동학대로, 아동복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하여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다보면 특히 최근의 상황처럼 피해아동·청소년의 연령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을 접하다보면 아동학대 및 아동복지 시스템과의 연계의 필요성이 많이 느껴진다. 각기 다른 영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피해아동·청소년이 동일한 경우가 많다. 사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아동학대이다. 그런 개념으로 아동학대 및 아동복지 시스템과 연계가 되길 바란다.

마. 정부 내의 전담기구 설치에 대하여

디지털을 매개로 한 성착취 범죄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더욱 치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사회를 위협할 것임은 틀림이 없다. 2020. 4. 2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다시 반영하여 조정하고 실행할 컨트롤 타워가 TFT 형태로 존재할 것이 아닌 전담기구로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기적으로 5년을 기획하여 운영해보고 다시 연장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 계획하여 운영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지만,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모든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전문인력이 함께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6. 언론과 학교에 바란다

‘아청법’이 개정되기 전, ‘아청법’ 개정을 위해 언론이 많은 역할을 하였다. n번방 성착취 사건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결과적으로 조주빈 일당을 검거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도 언론이다. 그러나 ‘아청법’이 개정된 이후 언론은 개정된 법률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도 별로 없다. 문제가 있다는 것만 부각시키고 호들갑을 떨면서 여론을 주도하는 것만이 언론의 역할이 아니다. 차분히 내용을 알리고, 깊이있게 문제를 다루고 대안을 짚어주는 것, 그리고 그 대안이라는 처방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생각처럼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 ‘아청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지금 시점에서 언론

에게 요청되는 것이 바로 이런 보도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직접 만나고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아동·청소년이 피해자/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방교육에 힘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이 발생한다면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청소년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 이를 위한 교육자료들이 개발되고 이를 토대로 교사교육과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성매매 피해의 경우 낙인과 비난, 편견이 높아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청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과 왜 개정되었는지, 개정의 취지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이를 제대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적용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복지부 등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하다. 2020년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개정 ‘아청법’이 시행되기 전 이를 알리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협업하여 서울시의 초·중·고 학교에 홍보책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북: “저도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6,000부를 배포한 적이 있다. 이후 2021년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디지털 성폭력, 성매매 통합교육 매뉴얼’ 개발을 십대여성인권센터에 의뢰하였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여 매뉴얼을 개발하여 교육청에 보냈다.

2021년 10월,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 개정된 ‘아청법’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어 교사들조차 ‘아청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조금이라도 극복해보고자 서울시 교육청에 다시 홍보책자 배포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는 2021. 11. 11. 공문⁴⁰⁾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성착취(성매매)에 이용된 경우 ‘자발적 인지’, ‘강제적 인지’ 구분없이 모두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북을 다음과 같이 배부하오니, 기간 내에 수령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시 각 학교에 홍보책자 10,000부를 배포하였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40) 제목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북」 배부 안내
수신자 청(학교통합지원센터)1-11, 초전체(1-604), 중전체(1-390), 고전체(1-320), 특수학교 전체(1-32), 각종학교 전체
시행 민주시민생활교육과-25806(2021. 11. 11.)

IV. 나가는 말

대상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정 ‘아청법’은 전혀 존재감이 없고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n번방 이후 디지털 성범죄는 멈추지 않고 더욱 확산되고 있다. 범죄는 더욱 안전하고 보안성이 강한 매체로 이동하고 있다. 피해는 점점 저연령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아청법’이 개정되기 전과는 이미 상황이 다르다. 현재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비록 별로 없지만, 아동·청소년을 오히려 처벌하고 있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 것이다. 아직 법 시행이 된 지 이제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반영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있게 집행해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 사회는 ‘아청법’ 개정 전·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질 것이라고 발제자는 굳게 믿고 있다.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토론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김현아 변호사

(한국젠더법학회/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김대중 사무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조주은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경찰청 생활안전국)



십대여성인권센터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



토론 1

성착취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 실현을 위한 과제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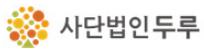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토론]

성착취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 실현을 위한 과제

2021. 11. 30.

강정은 변호사



순서

1. “대상아동·청소년” 삭제의 의미

2. 현장의 실태: 법과 현장의 간극

3. 앞으로의 과제

- (1) 성착취 관점의 이행: 입법, 행정, 사법
- (2) 아동·청소년 권리 기반의 중사자 교육·훈련 제도화
- (3)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수사·재판·지원환경의 마련
- (4)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체계와의 연계와 협력
- (5) 현장이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6)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인식 개선활동

1. “대상아동·청소년” 삭제 의미

■ 성착취범죄에 이용당한 아동·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 ‘보호’의 이름으로 가하는 형사적 제재의 철폐
- 법을 위반한 사람 X → 범죄의 피해자
- 아동·청소년 개인의 탓 X → 사회구조의 문제

■ 성매매범죄에 대한 관점의 변화

- “매매” → “착취”

1. “대상아동·청소년” 삭제 의미

- 국제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9),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삭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2017), 대상아동·청소년 삭제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2019),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세계일보

[단독]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안 놓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국제무대서 이견 노출

염유섭 입력 2019.09.25. 13:47 수정 2019.09.25. 14:47

이번 심의에서도 해당 아청법 개정안이 논란이 됐다. 이날 회의 녹화 영상에 따르면 심의 둘째 날 위원회 측은 개정안이 국회에 상당기간 계류 중이라며 진행 상황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을 질의했다. 그러자 정부 대표로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보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 입법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대상 아동·청소년이 재차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지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제도 해지의 적정성과 폐지 시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보류 의견을 낸 것이다.

반면 여가부는 3분가량에 걸쳐 아청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 발언이 끝나자 곧바로 마이크를 잡은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성인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착취”라며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서 사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경우,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소년원 송치 등에 갖는 두려움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시행 중이고, 그 외 지원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대상아동·청소년” 삭제 의미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이행

-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9),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

28. (중략)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a) 성폭력 및 학대가 여전히 만연해 있으며, 온라인 아동 성매매 및 그루밍과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급증하였다는 점
- (b) 만 13세 이상인 아동은 동의능력이 있다고 간주되어,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점
- (c)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다고 고려되는 아동(“대상아동”)이 범죄자로 취급되며, 법적 조력 및 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금과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성적 착취를 당해도 신고를 단념하게 된다는 점
- (d)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를 유죄판결을 받은 성인 범죄자에게 보호관찰을 포함한 관대한 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

1. “대상아동·청소년” 삭제 의미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이행

-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9),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

2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강력히 권고한다.

- (a)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 그리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b)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할 것
- (c)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할 것
- (d) 성매매 및 성적 학대에 연관된(“대상아동”) 모든 아동, 다시 말해 만 18세 미만의 모든 개인을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하고 “보호처분” 폐지, 지원서비스 및 법적 조력 제공,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하여,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처우할 것
- (e) 학교를 포함하여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접근성이 높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 친화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를 통한 성적 착취 및 학대 신고를 독려할 것
- (f) 교사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자가 강요의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기소되고,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2. 법과 현장의 간극

- 여전히 현장에서 살아있는 “대상아동·청소년”: 소년법상 ‘우범소년’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 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2. 법과 현장의 간극

- ‘대상아동·청소년’ 삭제 →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뛰어들 것이다?

- ‘우범소년’ 삭제 → 아동·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2. 법과 현장의 간극

- 성매매아동·청소년은 다르다? X 모두 같은 “아동·청소년”
 - 아동
 - 청소년
 - 보호대상아동, 지원대상아동
 - 학대피해아동
 - 위기청소년
 -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

2. 법과 현장의 간극

- 법의 취지를 이행하지 못하는 현장
 - ‘가해자’가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에게 향하는 질문: “너, 왜 그랬어?”
 - 학교, 위(Wee) 센터 등 여러 기관에 걸친 반복된 진술: 2차 피해 노출 위험 ↑
 -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순간 또 다른 폭력에 노출 (아동학대)

3. 앞으로의 과제: (1) 성착취 관점의 이행 (입법, 행정, 사법)

- 국제사회가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 “성착취”, “성매수범죄의 피해자”

지양	사용 권고
Child prostitute (아동 성매매)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prostitution (성매매상황에 있는 아동 성착취)
Child prostitute or child sex worker (성매매 아동)	Children exploited in prostitution (성매매로 착취된 아동)

- 협약 제19조 성적 학대를 포함한 가혹한 처우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 협약 제34조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당사국의 의무

3. 앞으로의 과제: (1) 성착취 관점의 이행 (입법, 행정, 사법)

- 국제사회가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 “성착취”, “성매수범죄의 피해자”

-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2조 이 의정서의 목적상,

가. “아동매매”라 함은 보수나 다른 대가를 받고 개인이나 집단이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모든 행위나 거래를 말한다.

나. “아동성매매”라 함은 보수나 다른 대가를 받고 아동을 성적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 “아동음란물”이라 함은 수단을 불문하고 실제 또는 가상의 노골적인 성적 활동에 관련된 아동에 대한 표현 또는 성을 주목적으로 한 아동의 성적 부위에 대한 표현을 말한다.

3. 앞으로의 과제: (1) 성착취 관점의 이행 (입법, 행정, 사법)

- 국제사회가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 “성착취”, “성매수범죄의 피해자”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성적학대와 성착취’의 형태 (일반논평 제13호)
 - ①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② 상업적 목적의 성적 착취에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
 - ③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보여주는 시청각 이미지 제작에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
 - ④ 아동 성매매, 성노예, 여행 및 관광에서의 성착취, 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강제결혼을 위한 국내적·국제적 아동매매, 그 밖에 물리적 힘이나 억압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리적으로 강제적이고, 착취적이며, 상처를 주는 성적 피해를 주는 행위

3. 앞으로의 과제: (1) 성착취 관점의 이행 (입법, 행정, 사법)

- 성매매 = 성착취 = 아동에게 가하는 ‘폭력’이자 ‘학대’
- 입법: 성착취 용어의 개정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용어 혼재의 문제 개선 필요
 - 성착취 용어에 대한 거부감?
 - 성매매 용어에 대한 낙인

3. 앞으로의 과제: (1) 성착취 관점의 이행 (입법, 행정, 사법)

- 행정: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원
 - 아동·청소년을 만나고 아동·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모든 관계 종사자
 - 성매수범죄에 이용당한 아동·청소년 역시 폭력, 착취범죄의 피해자라는 관점 실천
- 사법: 입법취지를 이행하는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
 - 수사, 재판, 형 집행 모든 단계에서의 입법취지 실천
 - 발제자 제시한 사례 1, 사례 2, 사례 3이 더 이상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 결국, 입법·행정·사법기관에 대한 입법취지의 이행 모니터링이 중요하고 필요

3. 앞으로의 과제 (2): 아동권리 기반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도화

- 개정법률의 해석·적용은 결국 종사자의 몫
 - 아동·청소년 개인의 일탈, 비행, 범죄로 보는 시각 여전
 - 전문성: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맥락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범죄의 특성
 -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교사, 사회복지사 등 각종 성범죄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 관계부처 공무원 등에 대한 아동권리 교육 점검 필요
 - 교육·훈련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도화 필요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대한민국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
“인권교육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절한 자원할당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아동권리교육과 인권교육을 보장하고,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의무적 훈련을 제공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3. 앞으로의 과제 (3):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

- ‘보호의 대상’을 넘어 ‘보호받을 권리의 주체’
 - 과연 성매수범죄에 이용당한 아동·청소년을 권리의 주체자로 보고 있는가
 - 아동·청소년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행복추구권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생명·생존 및 발달권
 - 참여권

- 국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아동의 권리를 이행하는 책무를 지는 이행의무자

3. 앞으로의 과제 (3):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수사 및 재판·지원환경
 - 나이, 발달단계,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정보의 제공 필요
 - “왜 아동·청소년이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에 귀 기울여야
 -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낙인, 비난과 편견
 - 부모 또한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하지 않은 환경일 가능성
 - 범죄수사규칙 제13조 보호자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통지의 문제
 - 규칙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통지의 예외를 열어 둘 필요 (아동·청소년의 의사 존중)
 - 꼭 부모여야 하는가?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아동·청소년이 신뢰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 (지원단체 종사자, 피해자 변호사 등)

3. 앞으로의 과제 (4):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체계와의 연계와 협력

- 왜 그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상황에 놓여졌는가?
 - 근본적인 원인을 철폐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체계를 아울러 검토해야
 - 이미 아동·청소년을 만나고 있는 지원체계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 전문성 있는 지원기관에 신속하게 연계 필요
 -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는 아동·청소년 + 성착취 모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
 - 아동·청소년 성착취 지원기관에 신속하게 연계하되, 각 관련 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피해자에게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3. 앞으로의 과제 (5): 현장이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피해자에게 실효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과 인력 확충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1. 예산 기준: 1개소 기준, 종사자 3인, 6,200만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1. 기준: 정규직 17명, 계약직 22명)
(권인숙 의원실 자료)
- 아동·청소년 성착취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마련
 -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 불분명
 - 그루밍 / 사진·영상 요구·강요 / 촬영제작 / 유포 협박·불안 / 유포 / 성착취 등 일련의 행위 통합적 지원 필요
 - 모니터링과 신고 접수 및 상담, 지원은 불가분의 관계

3. 앞으로의 과제 (6):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

■ 예방을 위한 교육

-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학교 역할의 중요
- 가정: 보호자 대상 교육
- 학교, 관계 종사자,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한 교육까지

■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

- ‘대상아동·청소년’ 삭제, 입법취지를 두루 알려야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발생경로, 매체 제한 없음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가해자, 피해자 불문)

마치며

■ 실효성 강화 방안: 아동 권리 관점과 원칙의 이행

-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실천 여부 입법과 행정 및 사법 모니터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해석상·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아동 최상의 이익) ①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마치며

■ 실효성 강화 방안: 아동 권리 관점과 원칙의 이행

- 근본적인 원인 철패를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복지지원체계와의 통합적인 검토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로서 사법제도 혹은 지원제도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해당 영역 법률개정에 대한 의견 청취
- 관계 종사자의 지속적인 의견 청취: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입법
- 분절된 부처, 정책을 넘어 상호 소통과 연대, 협력

: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시민사회 + 관련 기관 + 관계 부처: 여성가족부,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Thank you

토론 2

토론 2

김현아 변호사 (한국젠더법학회/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토론 3

토론 3

김대중 사무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토론 4

토론 4

조주은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경찰청 생활안전국)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I. 문제제기

과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되어 있는데,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아야 하고 따라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말아야 하며 야간에 조사를 이유로 경찰서에 대기시켜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발제문에 있는 것처럼 경찰 일선 단속 현장에서는 교육 부족 등으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아동청소년을 피의자로 조사하거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 11. 20 법 개정 이후 2021. 11. 16까지 198건 수준의 피해아동청소년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제대로 된 피해자보호·지원을 받았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속 및 수사 절차를 살펴보고 위와 같이 미흡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 및 수사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경찰 단속 및 수사 절차

경찰에서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11.20.)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수사 활동 및 ‘피해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법률 주요 내용 및 업무 절차 등을 수립해 일선에 하달하고 교육한 바 있다.

특히, 그간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후속 수사를 경제팀 또는 지능팀에서 담당하게 하였던 것을 피해자보호 인프라가 좀 더 나은 여성청소년 수사 기능에서 담당하도록 변경하였다.

주요 단속·수사 사항을 보면, 사이버·생활질서 등 관련 기능과 함께 랜덤채팅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수자를 중점 단속하고 디지털포렌식·추적수사 등도 적극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 **(알선자 단속)** 피해자 진술, 휴대폰, CCTV 등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알선자 및 성매수 대상자 등 색출 및 범죄수익금 환수 / 특히 강요나 협박, 위계 또는 위력 등 청소년을 억압하여 성매매 알선한 사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 **(추적수사)** 포렌식 등 통해 알선자·성매수 대상자 추적 / 청소년성매매는 주로 숙박업소에서 발생, 업주·종사자에 대한 장소제공 여부 및 「청소년보호법」 등 적극 검토
 - ▶ **(유인·권유 행위 수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있어서 성을 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수 위해 ‘아동·청소년 유인 또는 권유행위’도 처벌(제13조)
- ※ 청소년이 먼저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성구매자의 유인·권유행위에 해당함에 유의

◎ 참고 판례(대법 2011도3934) :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 행위 할 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과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갑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사안에서, 피고인 일련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피해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 재유입 방지를 위해 성매매 피해 상담소 등 지원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 ▶ **(아동·청소년 조사)** 해바라기센터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時 보호자 또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 상담사 등 신뢰관계인 동석 조치 / 피해 아동·청소년 수사과정상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수사절차 및 보호·지원기관 등을 상세 안내
- ▶ **(기관 통지)** 담당 수사관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기관의 원활한 지원 위해 수사 후 지체없이 여가부 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의무)
- ▶ **(포상금 안내)** 신고자의 신고로 성매수 상대방이 청소년성보호법으로 기소되거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여가부의 포상금 지급 안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 후 철저한 추적 수사를 통하여 성매매 알선자 형사입건 등 재영업 행위를 차단 하고 숙박업소 등 임대인이 성매매 알선 사범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 확인한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등 몰수·추징토록 하였다.

2. 발제문 사례 발생 원인

경찰청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과 함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절차들을 마련해 일선에 하달해 시행하였지만 정작 단속 현장에서는 위 지침을 알지 못했다. 그간 해오던 관행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성매수자나 알선책을 검거하기 위한 조력자’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었을 수 있다.

발제 사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바라기 센터 또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에 우선 인계만 하였어도 피해아동 보호 지원을 누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성매매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불법게임장, 모의 총기류 등 다른 업무도 함께 처리하고 있어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

반면, 가출했다가 귀가한 청소년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건 만남 어플(양푼)을 통해 서울·경기도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금을 착취한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피해자는 지역 상담소 등과 연계해 학업과 생계비 등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 **(00청 여성수사대)** 피의자들은 지역 선후배인자들로, 대부분 문신을 하고 평소 6~10명이 무리지어 다니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지역 청소년들에게 위력을 과시하여 오던 중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공모,

2020. 4월 ~ 2021. 8월경까지 전국 각지에서 휴대폰 채팅어플(양푼 등)을 이용,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피해청소년 10명에게 불특정 남성에게 1회 15만원 대가를 받고 1년 5개월간 성매매 알선

피해 청소년들은 00여성인권지원공동체를 통해 피해자상담·심리치유, 의료 및 입·복학, 검정고시, 취업학교 등 지원

우수 사례들은 여성청소년 수사 기능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수사하면서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알선책들을 검거하였는데, 발제문에 있는 사례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아동·청소년들을 해바라기센터 또는 지원기관과 연계·지원을 하면서 라포를 형성하였다는데 있다.

단속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아동·청소년들은 불안, 공포심을 느낄 것인데, 현장에서 즉시 알선책을 확인하려는 단속 경찰관의 압박에 더 큰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고 특히 ‘부모에게 알려야한다’는 단속 경찰관 통보에 더 큰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3. 개선 방안

일선에서 성매매단속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과에서는 즉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과 사례회의 등을 통해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을 숙지하고 핫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경찰은 단속과 성매매 알선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지원은 민간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역할을 분담해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지원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성매매 등 단속 성과평가 항목에 ‘피해아동·청소년 발견 및 보호 지원’ 지표를 넣거나 배점을 상향시켜 단속 경찰관들이 알선책을 검거하려고 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우선 보호지원에 힘쓰도록 유도한다.

피해아동·청소년 발견시 보호자 통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살펴 시기를 늦추거나 통지 대상자 변경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부모를 비밀누설 대상인 ‘타인’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헌법재판소도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어(2011헌마659) 원칙적으로 통지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89조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서는 소년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등 피해자 일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다.

하지만, 청소년에게도 헌법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고 위 수사규칙 단서를 적극 해석할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청소년이 극도의 성적수치심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호지원 단체 관계자를 신뢰관계인으로 지정해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아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도 국선번호인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